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II

- 일제의 해외 조선인 통제와 친일 협력(1904~1937) -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II

초판 1쇄 발행 2008년 12월 1일

발행인 ||成大경

발행처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5층
- 전화 02)2180-2409 • 팩스 02)2180-2423
- 홈페이지 www.pcic.go.kr

제작유통 || 도서출판 선인

-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 E-mail sunin72@chol.com

정가 || 비매품

발간 등록번호 11-1560010-000003-10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VII

- 일제의 해외 조선인 통제와 친일 협력(1904~1937) -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발간사

옛사람들은 역사를 ‘거울[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 이름에 ‘감(鑑)’이라는 글자를 붙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중국의 자치통감(資治通鑑)이 그렇고, 우리나라의 동국통감(東國通鑑)과 동국병감(東國兵鑑)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역사를 거울로 인식하여 후세 사람들의 경계거리가 되기를 기대했던 옛사람들의 생각이나, 지난 세기에 있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를 분명히 밝혀 국민 대중과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도록 하자는 우리 위원회 활동 목적은 서로 그 끈이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발족된 이래 3년 반 동안 우리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45년 8·15해방까지 40년간 행해진 친일반민족행위를 크게 세 시기, 즉 러일전쟁에서 3·1운동까지(1904~1919년)를 제1기, 3·1운동 이후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1919~1937년)를 제2기, 중일전쟁부터 8·15해방까지(1937~1945년)를 제3기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조사해왔습니다.

그러나 1949년 반민특위가 좌절된 후 6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린 터여서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찾아내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심의자료를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기준을 만들고, 반민족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그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최종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수많은 논의와 고민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작년과 재작년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1기와 제2기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정된 301명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서를 수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또한 제1기 조사 과정에 참조했던 사료들을 묶어 두 권의 사료집도 발간했습니다.

올해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에 힘써서 대체로 금년 말까지 조사대상자 선정을 매듭짓고, 내년에는 우리 위원회의 계획대로 진상규명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작년에 이어 제2기에 해당하는 1919년 3·1운동 이후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사료를 중심으로 모두 5권의 사료집을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의 첫 번째 책(제3권)에는 조선총독의 훈시(訓示)와 유고(諭告), 치안유지법령, 주요 경제기구와 제도, 조선교육령과 시학관제도, 언론계의 상황과 매일신보의 주요 논설, 사이토 총독에게 보낸 조선인의 서간 등을 수록했습니다. 제4권에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던 ‘조선귀족’의 약력 자료와 관련 단체,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였던 총독부 중추원의 회의 자료를 담았습니다. 제5권에는 일제가 편찬했던 조선반도사 원고 일부,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 관련 자료를 넣었습니다. 제6권에는 3·1운동 이후 일제가 실시한 민족분열정책의 일환인 친일파 양성책에 놀아난 국민협회·동민회·대정친목회 등 주요 친일단체들을 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권에는 중국·일본·러시아 연해주 지역 등 해외 조선인 사회의 친일 단체와 인물에 대한 자료를 묶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세기 민족의 과거 속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 모두가 겪은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교훈으로 남겨 정의로운 미래 사회의 윤리적 규범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이 다섯 권의 사료집은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성 대 경**

◆ 일 러 두 기 ◆

1. 이 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연구 과정에서 취합된 전체 사료 중에서 학술적·교육적 가치가 크거나 특별한 중요성 또는 희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이 책에 수록된 사료는 현대어로 번역하거나 풀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인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 혹은 특정 한자어 등 원 상태로만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단어는 한자나 원어를 () 속에 병기하였다. 풀어 쓴 단어, 외국인명의 원음 표기, 필명이나 창씨개명의 본명 등의 경우에도 ()로 병기하였다.
3. 사료의 특정 부분의 해석이 필요하거나 역사적 배경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각주는 ‘번역자 주’나 ‘편집자 주’에 해당됨을 밝혀둔다.
4.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나 용어의 표기법은, 사료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 사료의 표기를 따르고자 했다. 특히 친일적인 인사들이나 단체에서 나온 글의 경우, 그 ‘친일성’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천황, 내지, 반도, 지나, 국어 등이다.
다만, 일제 당국이나 일본인이 주변민족을 비하하고 자민족을 격상시키려는 의도로 사용했을 경우는 오늘날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국왕, 일본, 조선, 중국, 일본어 등이다.
5. 장·절 등을 구성하고 있는 제목의 경우, 가급적 원 사료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원 제목이 그 의미를 집약해서 드러내지 못하거나 신문기사 등 여러 개의 관련사료를 동시에 묶어 수록할 경우 적절한 제목을 붙이기도 했다.
6. 이 책에 수록된 ‘해제’의 역사용어나 개념, 서술내용 중 일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법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7.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찾아보기’는 인명, 단체 및 기관명, 사건명을 기본으로 하였다.

차례

* 발간사	4
* 해제 : 일본과 만주·연해주 지역 조선인 친일에 대한 접근	11

I. 중국 지역

1. 일본 외무성 소속 조선인 경찰_ 43	
1) 간도 총영사관 관내 경무 및 치안 상황	43
2) 간도 출병에 관하여	44
3) 간도 신시설에 관한 건	49
4) 간도 경찰관 증파에 관한 건	64
5) 조선인 순사 채용에 관한 건	65
6) 1931년 재길림 총영사관 경찰사무 상황	67
7) 1931년 만주사변에 의한 재만 영사관 및 재중국 일본인 철수와 그 피해	76
8) 1932년 재만 영사관 경찰의 활동 상황	79
9) 1932년 중 간도(훈춘현 포함) 및 접경지방 중요 치안사항 월별표	80
2. 조선인 민회_ 93	
1) 조선인 거류민회 설립에 관한 건	93
2) 군대 출동에 의한 간도 진정(鎮靜)에 대한 사의(謝意)	94
3) 1924년 조선인 민회 보조에 관한 건	94
4) 간도 협의회에 관한 건	100
5) 연길현 자위단 조직에 관한 협의회 개최	102
6) 공비귀순취급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의 건	106
7) 조선인 민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 공로조서	109
3. 만주 보민회_ 111	
1) 비밀의견서(1920년 1월)	111

- 2) 만주보민주식회사 정관 112
 - 3) 만주보민주식회사 취지서 116
 - 4) 만주 보민회에 관한 건 126
 - 5) 보민회에 관한 건 126
 - 6) 1921년 만주 보민회 본부 업무 필기(3월부터 7월까지) 127
 - 7) 만주 보민회 확장에 관한 청원 129
 - 8) 보민회 관계자의 건언서에 관한 건 134
 - 9) 훈춘 지방의 개괄적 관찰 135
 - 10) 진정서(1921) 142
 - 11) 진정서(1923) 146
 - 12) 만주 보민회 보조비에 관한 건 150
 - 13) 보민회 지부 회장 회의에 관한 건 152
 - 14) 만주 보민회의 흥경현 왕청문 동포 학살의 광경 154
 - 15) 봉천성 조사반 파견 및 실시에 관한 건 157
 - 16) 조사반 행동에 관한 건 160
 - 17) 재만주 조선관계 영사관 회합회의 보고 173
 - 18) 보민회 본부 임원 연말 상여에 관한 건 180
 - 19) 만주 보민회 폐지 및 선후 조치에 관한 건 182
 - 20)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공적조사에 관한 건 186
 - 21) 보민회 현재 임원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1
 - 22)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해산수당 지급에 관한 건 206
 - 23) 제우교 순난(殉難) 조선인 유족 구제 청원운동 211
 - 24) 탄원서(1926) 212
4. 간도협조회_216
- 1) 간도협조회 개요 216
 - 2) 간도협조회 조직 개황 220
 - 3) 간도협조회 제1회 전체대회 235
 - 4)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 성적 242
 - 5) 민생단 조직에 관한 건 243
 - 6) 한교동향회 내정에 관한 건 246

II. 일본 지역

1. 박상희(朴尙僖), 동경 조선인 제 단체 역방기(歷訪記) _ 261
2. 상애회 총본부의 사업 시설의 개요 _ 278
3. 박춘금(朴春琴), 우리의 국가 신일본 _ 286
4. 만보산사건에 관한 조선인 결의대회 _ 309
5. 박춘금, 전시의회(戰時議會)와 나의 연설 _ 313
6. 홍준표(洪浚杓), 미국 국민에게 고함—존경하는 미국 국민에게 _ 316
7. 홍준표, 조선 사상대책 단견(短見) 단안(短案) _ 318
8. 조선신흥동맹의 개칭 및 분열 _ 319
9. 오사카부 내선영화사업조사회, 내선영화 대책 _ 322

III. 러시아 연해주 지역

1. 공의회에 대한 보고 _ 331
2. 뿌리아무르주 지역 일본 측 비밀요원 명단 _ 334
3.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설립의 건 _ 335
4.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_ 341
5. 조선인 단속 및 회유 방침에 관한 건 _ 346
6. 연해주 간화회(懇話會) 회칙 _ 350
7. 조선인 민회 보조비, 기타에 관한 회보(1921) _ 355
8. 조선인 민회 보조비에 관한 회보(1922) _ 364

* 찾아보기 366

해제 :

일본과 만주·연해주 지역 조선인 친일에 대한 접근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일제의 강압적인 병합 이후 해외로 이주한 조선인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는 무장 항일독립운동을, 일본에서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이에 일제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일본·만주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을 통제·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 특히 현지 조선인들이 중심이 된 친일 성향의 단체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거나 지원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에 중국, 일본,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 통제조직과 이와 관련된 조선인 친일단체 또는 핵심인물에 관한 자료 가운데 주요한 것들을 가려 뽑아서 편집·번역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자료가 실린 순서대로 지역별, 단체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1. 중국 지역

중국지역 자료는 모두 만주(지금의 중국 동북지역)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일제 통치기구와 이와 밀착한 조선인 친일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것들이다. 특히 조선후기 이래 조선인이 이주 정착해 사실상 조선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가려 뽑았다.

‘만주국’이 수립되기 전 일제의 만주침략 거점이자 만주의 조선인 항일투쟁을 탄압하고 각종 조선인 친일단체를 육성한 현지 총지휘부는 간도총영사관(間島總領事館)이었다. 일제는 1920년 이른바 ‘간도출병(間島出兵)’을 전후해 만주지역 항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이른바 영사관 분관(分館)이란 명목으로 각 지역에 조선인 경찰(영사관 경찰)들을

배치했다. 조선인 경찰을 앞장 세워 항일세력을 조사·체포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항일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없애고 재만 조선인 사회를 통제하고 친일화하기 위해 전 만주를 대상으로 조선인 민회(民會)를 조직했다.

한편 일제는 만주의 조선인 항일무장세력을 직접 탄압하기 위해 다양한 조선인 친일 무장세력을 조직했다. 일진회(一進會)에서 갈라져 나온 제우교(濟愚敎)가 모태가 된 보민회(保民會)는 1920년대 남만주지역의 가장 악질적인 친일조직이었다. 만주국 성립 이후 관동군 연길헌병대(關東軍憲兵隊) 산하 특무(特務) 외곽조직으로 조직한 간도협조회(間島協助會)와 산하 무장토벌대 역시 1930년대 중반까지 간도지역 항일운동을 가장 악랄하게 토벌해 명성을 떨쳤다. 간도협조회와 산하 무장조직은 이후 만주국 협화회로 흡수되었다. 특히 간도협조회 산하 무장조직원의 상당수는 ‘동변도명랑화(東邊道明朗化)’란 이름 아래 간도지역 조선인 항일세력을 탄압했던 ‘협화회동변도(協和會東邊道) 특별공작부’에 가담해 지속적으로 항일세력을 탄압했다. 이와 별도로 1928년 10월 참의부(參議府) 등 항일무장조직의 투항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선민부(鮮民部)와 그 후신인 한교동향회(韓僑同鄉會) 또한 무수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살해했다.

1) 일본 외무성 소속 조선인 경찰(영사관 경찰)

(1) 일제의 만주침략 이전

1910년 병합을 전후해 간도지역의 망명 세력은 재간도 조선인 사회를 배경으로 해외 무장투쟁 근거지를 마련하고 의병운동을 계승해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간도는 일제의 법이 직접 미치지 않는 곳으로서 3·1운동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온 독립지사들의 주된 활동무대였다. 간도지역의 독립운동은 강력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무장투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3·1운동 직후부터 무장투쟁은 더욱 격렬해져 1920년 청산리·봉오동 전투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조선통치의 안정화와 만몽(滿蒙)지역을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려는 일제는 병합 전부터 통감부 간도출장소를 설치하고 간도협약(間島協約) 이후 간도총영사관을 설치하면서 (일본 국민으로서의) 조선인 보호와 치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간도지역의 조선인 항일운동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철저히 탄압했다. 아울러 항일운동의 근거지로서 재만 조선인 사회를 친일화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각종 거류민회를 조직해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들로 조직된 각종 무장단체 이른바 토벌대 등을 조직해 조선인의 항일운동을 뿌리 뽑고자 했다.

1932년 ‘만주국’ 성립 이전 간도지역 항일세력을 탄압하는 일제의 현지 총지휘부는 간도총영사관이었다. 그 말단 행동대는 간도총영사관의 각 지역 분관(分館)에 소속된 경찰들이었다. 만주국 성립 이전까지 간도지역은 일시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중국 당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관동군이나 조선주둔군이 일상적으로 ‘토벌’에 나서기 어려웠다. 대신 간도지역의 조선인을 일본신민으로 규정하면서 영사관 소속 경찰들이 각 지역에 설치된 영사관 분관을 거점으로 항일세력을 탄압하는 최선봉에 나섰다.

이 책에 수록된 관련 자료들은 훈춘사건과 간도출병 시기 조선인 항일세력과 일본 군경(軍警)의 전투 상황, 그리고 간도총영사관이 일본 외무성과 협의해 중국 관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조선인 독립군세력을 ‘비적(匪賊)’이라 부르며 대책 마련(경찰력 증대)에 부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도 총영사관 관내 경무 및 치안 상황, 간도 출병에 관하여>

또한 간도총영사관이 조선총독부와 긴밀한 협의 아래 만주지역의 ‘제국신민’인 조선인의 ‘보호 단속’을 위해 영사관원을 파견, 치안 유지란 명목으로 간도 각 지역에 영사관 분관을 설치하고 조선인 경찰을 충원·신규 보충해 조선인 마을들을 감시 통제하고 항일세력을 제거하려는 일련의 과정과 각 지역 경찰이 증원 배치되는 상황과 규모 등을 보여주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간도 신시설에 관한 건, 간도 경찰관 증파에 관한 건, 조선인 순사 채용에 관한 건>

이 자료들은 일제가 간도총영사관 소속 조선인 경찰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1918년 4월 말 일제는 간도 총영사관 소속 7곳, 국자가(局子街) 분관 소속 5곳, 두도구(頭道溝) 분관 소속 3곳, 훈춘(琿春) 분관 소속 2곳, 백초구(百草溝) 출장소 소속 1곳 등 모두 18개의 영사관출장소(경부를 주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영사관파출소(순사부장을 주임으로 하는 경우)를 설치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영사관 측은 중국관헌과의 관계나 현지 조선인의 반발을 고려해, “그 명칭에 경찰이라는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면서 ‘영사관출장소’ 또는 ‘영사관파출소 사무소’ 등의 명칭으로 위장하고자 했다. 그 이유는 이 지역 경찰권은 중국관헌에게 속해 있어서 조선인이 보기에 “경찰이라는 글자를 쓰면 단순히 악행이나 비행의 처벌 수사만 관장하는 듯한 어감을 주고 보호 지도하는 온정을 갖지 않는 듯이 생각해 시정(施政)상 지장이 적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주목할 것은 조선인 경찰의 채용이다. 간도지역 영사관 소속 경찰은 외무

성에서 채용하는 경찰, 조선총독부 소속 파견 경찰, 간도 현지 채용 경찰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특히 이 지역의 주민은 전부 조선인이므로 조선인 경찰관을 채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직무를 실행할 수 없다”고 하여 조선인 경찰을 채용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인 경찰관은 도저히 본 성에서 채용의 길이 없으니 대개 총독부가 채용”하고 일부는 “간도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으니 10명 정도는 여기서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경찰의 민족별 비율에 대해 “간도 조선인 순사는 반 수, 일선 지휘관인 경부는 3분의 1 정도로 신규 채용을 하고 조선총독부로부터 파견된 조선인 경찰관은 경부 2명, 순사 및 순사보 16명, 그 반수인 경부 1명 및 순사, 순사보 8명은 총영사관 및 각 분관의 경찰서에 배치되어 경찰서 임무에 종사하고 다른 반수는 간도 파견 총독부 헌병 측에 속해 헌병장교 외 지휘하에 전적으로 탐정(밀정-인용자) 임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세웠다. 이는 만주지역 조선인 경찰의 필요성과 그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인 경부는 주임(지서 책임자)으로 쓰지 말고 총독부 영사관 및 각 분관에 배치해 경무의 보조 및 통역에 종사”시켜야 한다고 해 일선 지휘 책임을 맡기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조선인 경찰관 급여도 “일본인에 비해 약 반 액이 적당”하다고 해 경찰 내에서도 민족차별을 적용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경무(警務)의 통일을 위해 모두 외무성에서 임용함이 적당”하다고 해 이들을 장차 외무성 경찰로 채용하기로 했다.

일제가 표방한 ‘간도 신시설’은 영사관 분관을 거점으로 한 경찰력의 증대만이 아니라 간도지역에 그물망 같은 각종 대민 통제시설의 설치를 병행하는 것이었다. 수록된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간도 신시설’ 설치란 조선인 부락에 경찰분서와 파출소 설치, 조선인 경찰(외무성 경찰)의 충원과 신규 채용, 행정구획 정비와 조선인 거류민회의 조직, 각종 첩보기관의 운용, 배일(排日) 조선인 단속과 친일파 육성, 친일언론인 『간도시보』 발행, 우편·금융시설의 확충 등 간도지역 전반에 대한 물샐틈없는 통제를 완성하는 계획에 다름 아니었다.

간도지역은 조선인 이주민 사회였고 조선인 항일세력 또한 이주민 사회를 근거로 활동했기 때문에, 일제는 조선인 순사들을 앞세워 번역(통역), 염탐과 정보수집, 항일세력 색출, ‘무장토벌’ 등을 전개했다. 대규모 군사작전의 경우 간도의 일제 경찰은 조선군사령부와 협의해 군경합동작전을 전개했다. 특히 청산리·봉오동 전투로 크게 위신을 손상한 일제는 무장독립세력과 그 근거지가 된 간도 조선인 사회에 보복을 전개하기 위해 훈춘사건(琿春事件, 일명 간도사건)을 일으켰다. 이를 구실로 조선주둔 일본군을 파견했

다(간도출병).

당초 일제는 중국군을 동원한 조선독립군 토벌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중국영토인 간도에 직접 군대를 파견하는 ‘대토벌’ 계획을 세웠다. 이 대토벌의 구실이 된 것이 ‘훈춘사건’이었다. 1920년 10월 2일 새벽 4시 일본군에게 매수된 장강호(長江好)를 두목으로 하는 마적단이 훈춘을 습격했다. 마적단은 상가를 약탈하고 훈춘의 일본영사관 분관을 방화한 뒤 오전 8시에 퇴각했다. 일본 측의 피해는 사망 13명, 중상 11명, 경상 20여 명이었다. 일제는 이 사건을 ‘불명선인(不逞鮮人)’이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재만 일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즉각 군대와 경찰을 출동시켰다.

간도지역 영사관 분관 경찰들은 일본군과 합세해 만주지역 항일세력은 물론 조선인 부락을 습격해 잔인하게 학살했다.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이루어진 조선인 학살 가운데 특히 그 피해가 가장 심했던 기간은 19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이었다. 조선인이 밀집한 훈춘·왕청·화룡·연길·유하·홍경·관전·영안현 등 8개 현에서 조선인 피해는 피살인원 3,600여 명, 피체인원 170여 명, 부녀자 강간 70여 건, 소실 가옥 3,200여 채, 소실 학교 41채, 소실 교회 16채였고, 양곡의 소실이 5만 3,400여 석에 이르렀다(경신참변). 이로써 독립군은 밀산을 거쳐 연해주로 이동하고 이 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상실되는 등 간도지역의 조선인 독립운동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2)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장작림(張作霖)이 이끄는 봉천군벌(奉天軍閥)을 원조하며 중국 동북지방을 노렸다. 그러나 장작림이 일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1928년 6월 일본 관동군은 장작림을 폭살했다. 이에 장작림의 아들 장학량(張學良)은 장개석(蔣介石)의 국민당 정부에 합류했고, 만주에서도 일본상품을 배척하고 일본이 장악한 만주 이권을 다시 회수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세계대공황으로 일제의 만주철도 영업도 부진해진 상황에서 중국 국민정부의 만주철도포위선 건설계획은 일본의 만주철도 이권을 위협했다. 또 소비에트 러시아의 제1차 5개년계획이 진척되자 일본은 러시아의 만주 진출을 크게 우려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것을 ‘만몽(滿蒙)의 위기’라고 선전하고, 1931년 7월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 나카무라 대위 피살사건에 편승해 만주침략을 정당화하는 여론을 조성했다.

만주침략의 주모자는 일본 관동군(關東軍) 참모부였다. 관동군은 비밀리에 ‘만몽영유계획(滿蒙永有計劃)’을 모의하고, 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1931년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유조구사건(柳條溝事件)을 일으켜 만철(滿鐵) 선로를 스스로 폭파했다. 관동군은 이를 장학량 군대의 소행으로 몰아 조선군사령부와 연계해 만주침략을 개시했다(만주사변).

1931년 9월 이른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간도지역은 물론 만주 전역에서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는 반일무장투쟁이 거세게 타올랐다. 특히 간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반일유격대는 1940년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만주지역 반일조선인유격대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독립군(혁신의회의 한국독립당 소속), 양세봉이 총사령인 조선혁명군(국민부의 조선혁명당 소속), 중국공산당 동만성특별위원회 산하 반일유격대 소속 조선인 공산주의자들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서로 연합하였으며, 심지어 만주지역 비적세력과도 연계해 일본군경을 공격했다.

이에 일제는 조선군 19사단 이른바 ‘조선군 월경(越境) 부대(간도파견군)’와 조선 국경수비대 경찰 그리고 간도총영사관 산하 경찰력을 총동원해 항일세력을 ‘박멸’하고자 했다. 그리고 만주를 영원히 손아귀에 두기 위해 꼭두각시 정권인 ‘만주국’을 건설했다(1932년 3월). 이와 함께 비적 소탕이라는 명목으로 군경을 동원하고 친일 성향의 재만 조선인을 무장시켜 항일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

일제는 만주 항일세력에 대해 “구국군(救國軍)이라는 비적, 공산당원 및 민족주의 불령선인이라는 3대 암종(癌腫)”이라고 지목하고, 이들 세력이 “각각 주의 주장이 맞지 않아도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해 왕왕 서로 제휴해 행동을 같이하거나 혹은 서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반일, 모일(侮日)을 내건 구(舊) 동북정권이 실추”하고 만주국이 새로 건국되면서 “우리(일본영사관) 경찰관과 지방 군경과의 협조 연락이 잘 이루어져 이전의 곤란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한편 “사변으로 인한 치안통제의 일시적 붕괴 때문에 병비(兵匪) 및 공비(共匪)의 횡행이 갑자기 증가하고 거류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및 상황에 편승한 불량불령(不良不逞)의 무리들에 대한 단속” 등으로 인해 “영사관 경찰의 임무는 더욱 가중”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사관 경찰기구의 확충과 인원 증대를 꾀했다. 다시 말해 만주국 수립 후 “만주국 치안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을 원조하는 것이 제국의 최대 급무”이며 영사관 경찰과 이후 만주국 산하의 경찰조직이 치안의 핵심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경찰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조선인이 밀집한 간도지역의 조선인 항일무장투쟁이 거세게 타오르는 상황에서,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들은 사실상 간도 일대의 치안과 항일세력 탄압의 최선봉에 섰다.

이 책에 수록된 관련 자료들도 만주사변 당시 항일세력과 재만 일본군경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전투상황을 지역별·시기별로 보여주고 있다. 항일무장세력은 침략과 식민통치의 거점인 각 지역의 영사관 분관(파출서)을 습격했고, 일제 또한 군경을 동원해 맞대응했다. 물론 여기에 조선인 경찰이 관여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1931년 재길림 총영사관 경찰사무 상황, 1931년 만주사변에 의한 재만 영사관 및 재중국 일본인 철수와 그 피해, 1932년 재만 영사관 경찰의 활동 상황, 1932년 중 간도(훈춘현 포함) 및 접경지방 중요 치안사항 월별표>

이 시기 조선인 순사 또는 순사보와 관동군 헌병보조원 등은 일본 군경의 밀정, 번역(통역), 길잡이, ‘토벌대’ 등으로 참여해 조선인 항일세력을 직접 체포하거나 살해했다. 조선 내 경찰과 달리 이 지역 조선인 경찰들은 직접 무장대를 조직해 항일세력과 교전하거나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각종 반민족행위에 가담했다.

만주에서 일본영사관 소속 경찰은 1936년 철수했다. 조선인 경찰 가운데 일부는 퇴직하거나 조선으로 돌아갔지만, 상당수는 만주국 경찰로 변신해 지속적으로 만주의 항일세력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다.

2) 조선인 민회

1905년의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은 1907년 간도에 조선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면서,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이며 간도 거주 조선인은 청국 정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1909년 일본은 대륙침략의 발판을 얻기 위해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撫順) 탄광 개발권을 얻는 대신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고, 간도의 조선인은 청나라의 법률 관할 아래 두어 납세와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간도협약’을 맺었다. 간도지방의 영유권을 청국에 넘긴 것이다. 이에 따라 간도파출소를 폐지하고 용정에 일본영사관이 새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을 통해 두만강 북쪽 조선인 개간지에서 조선인의 거주권과 토지상조권(기한부 토지소유권으로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보장받았다.

간도협약 체결 후 일제는 북간도 각 상부지(商埠地)에 일본총영사관과 각 영사분관을 설치해 조선인 사회를 통제하고 상부지 밖에 거주하는 조선인들까지도 ‘보호’의 대상으로 편입시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맺은 간도협약에 의해 재만 조선인이 중국 관할 아래 있었기 때문에 침략을 확장하는 데에는 불리하게 된 상황이

었다.

이에 한국병합 후 일본은 만주의 조선인을 ‘일본신민’으로 규정하고 1915년 1월 중국 원세개(袁世凱) 정부와 만몽조약(滿蒙條約)을 새로 체결했다. 1915년 8월 일본 각의에서는 토지상조권과 영사재판권은 만몽조약에, 토지소유권은 간도협약에 의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신민’으로 규정해 영사관의 활동무대를 북간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치외법권과 영사재판권을 앞세워 일본인 거류민회에 준하는 조선인 민회를 각지에 설립하여 만주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이 지역 조선인 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조선인 민회의 효시는 북간도지역에서 1916년 12월 설립된 훈춘조선민공회(琿春朝鮮民公會)였다.¹⁾ 이후 북간도지역에 모두 18개, 남만주지역에 13개의 조선인 민회가 설립되었다. 북만주지역에는 당초 8개의 조선인회가 설립되었으나 1920년대를 거치면서 하얼빈(哈爾濱)·일면파(一面坡)·치치하얼(齊齊哈爾) 조선인회 3개만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1931년 만주사변 이전까지 만주지역에는 총 34개의 조선인 민회가 존재했다.

만주지역의 조선인 민회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있었으며, 초기에는 각기 다른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조선인 민회는 일본인 거류민회와 마찬가지로 일본영사관의 규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민회 설립경비와 운영비도 일본외무성과 조선총독부의 보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원의 선정과 운영방침 등도 일본영사관의 승인을 받았다.

조선인의 집중 거주지에 설립된 조선인 민회는 일본영사관의 시정보조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며, 직접적으로 조선인 사회를 감시하고 통제했다. 일본영사관 경찰의 감독 아래 호적에 관한 사항, 농촌금융에 관한 사항, 시장의 관리, 도량형기의 개량·보급, 통신 연락, 조선인 사이의 분쟁 중재, 교육·위생·식산·종교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했다. 일본영사관에서는 조선인 거류민회의 설립 기획에서부터 규칙 제정, 설립비 조달, 보조금 해결, 임원 선정, 제반 의결사항 등 전 과정을 완전 장악했고, 조선인 민회는 위생·교육·기타 일반 거주 조선인 공동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처리했다.

조선인 민회는 조선인의 호구조사라는 명목으로 대중의 동향을 파악하고, 회원들의 생활안전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금융부를 설치해 조선인에게 대부함으로써 조선인을 일본자본에 예속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등 조선총독부의 시정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 조선인 민회가 설립해 운영한 학교는 주로 조선총독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해 친일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선인

1) 1911년 5월 간도 용정 일본총영사관 내에 설립된 채용정조선인회를 최초의 조선인 민회로 보기도 한다.

사회 내부에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인 민회의 주된 업무는 조선인 사회에 대한 정보수집과 통제에 큰 비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민회는 일제가 만주지역을 장악하는 지역 거점이었다. 일제는 일본신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민회를 통제하는 한편, 민회 간부와 민회 조직을 이용해 재만 조선인 항일운동을 뿌리 뽑으려고 했다. 이 때문에 조선인 민회는 만주의 항일세력에게 일본의 만주침략의 전진기지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조선인 민회는 일제의 만주침략과 더불어 새로운 식민지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31년 10월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라는 하나의 통일적 지휘체제를 갖추고 조선인 사회에 대한 친일적 선전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다.

일본군의 만주점령을 계기로 남·북만주 지역의 조선인 민회는 1931년 10월 20일 봉천에서 16개 민회를 통합해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 1931.10~1937.12, 이하 연합회로 약칭)로 결성되었다. 연합회는 기존의 조선인 민회·조선인회·조선인 거류민회와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동거류민회 등 모든 조선인 민회를 망라한 중앙집권제 성격의 기구였다. 이후 연합회 산하에는 모두 123개의 조선인 민회가 설립되었다.

연합회의 결성을 통해 조선인 민회에 대한 일제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었고, 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에는 본부를 둔 봉천거류민회의 회장과 부회장이 자동으로 임명되었다. 그런데 당시 봉천거류민회의 회장은 일본인이었고, 따라서 조선인 민회의 지배권도 일본인에게 넘어갔다. 1934년 만주국이 개편되면서 북간도지역 조선인 거류민회도 연합회에 통합되었다. 이로써 연합회는 일제의 ‘지지’와 ‘보호’ 아래 재만 조선인 사회단체로는 가장 산하조직이 많고 규모가 큰 단체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조선인 민회 조직의 성장은 일제의 만주국 지배체제의 확립과 직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합회는 집단부락 건설과 자위단 설립을 추진하며 일제의 침략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고, 일제가 내세운 만주국의 지배이념인 ‘민족협화’와 ‘공존공영’을 선전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또한 조선인 민회를 통해 이른바 ‘산업제일주의운동’을 일으켜 재만 조선인을 만주국의 산업노동력으로 동원하고자 했다.

특히 일제는 민회를 통해 현지 조선인들을 조직해 각 지역의 항일무장세력을 제압하고자 했다. 특히 1932년 “간도출병에 즈음해 동 지방의 특수 사정에 맞추어 민정 및 자치단체의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각 기관의 협동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간도 주재 육군특무기관장, 관동군 파견막료, 재간도총영사, 조선총독부 파견원 및 만주국 측 대표자로 조직된 ‘간도 협의회’를 개최해, 공안대·보위단 등 각종 무력조직을 만들어 만주지역 항일운동을 거세하고자 했다. 또 이의 과도적인 조치로 지방부터 소규모 단위로 자위단을 조직하고 유신회(維新會)와 같은 이른바 민족융화기관을 만들어 운용하고자 했

다. 그 결과 1932년 7월 22일 연길현자위단이 조직되었다. <간도 협의회에 관한 건>

연길자위단은 간도파견 헌병대, 경찰서, 만주국 관련기관이 용정춘·국자가 등 이 지역 조선인 민회를 동원해 만든 친일무장조직이었다. 이후 만주 각 지역에는 친일자위대가 조직되어 조선인 항일세력 탄압에 앞장섰다. 조선인 자위단은 만주지역 군경조직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현지 사정에 밝아 항일세력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자위단원 일부는 이후 경찰 또는 간도협조회나 훈춘정의단, 간도특설대 등에 들어가 ‘직업적인 토벌활동’에 종사하기도 했다. <연길현 자위단 조직에 관한 협의회 개최>

만주지역의 조선인 민회는 1936년 9월 5일 만주국 협화회新京(新京) 조선인분회 설립을 시작으로 만주국 협화회로 합류했으며, 그해 11월 전만조선인민회연합회도 해소하여 협화회에 합류했다. 이후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한 총력전체제를 강화하여 이에 강제 동원되면서 조선인 민회 조직은 사실상 해산되었다.

3) 만주 보민회

보민회(保民會)는 일진회(一進會) 잔당인 제우교(濟愚敎) 세력을 중심으로 만주에서 조직되어 1920년대 이 지역의 가장 악랄한 친일조직으로 명성을 떨쳤다. 1910년 병합 후 일제는 모든 조선인 조직을 해체시켰고 친일단체인 일진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일진회 계통의 김유영(金裕永)·최정규(崔晶圭)·양정묵(梁正默) 등은 간도지역으로 이주해 일제의 항일세력 ‘토벌’의 전위대로서 활동하면서 생계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들은 1920년 이른바 ‘비폭력저항주의’·‘일선융합(日鮮融合)’·‘대동아주의’를 표방하며 주로 귀순신고·귀순권유 등 귀순업무를 담당한 친일협력적인 종교단체인 제우교를 설립했다. 제우교의 대도주는 김유영이 맡았다. 참고로 1921년 현재 만주 두도구의 제우교 신도 수는 약 2,500여 명이였다.

1920년 2월 이인수(李寅秀)·최정규 등은 서간도지방 독립운동단체의 파괴공작을 목적으로 제우교도들을 중심으로 보민회를 결성했다. 1921년 3월 8일 재만 조선인의 ‘안전과 보호’라는 명목으로 제우교 본부 부교령 이인수를 중심으로 보민회 설립에 관한 청원 운동을 전개했다. 그 내용은 주로 보민회 예산 확장(확장 설비비 125,000원)에 관한 것이었다. 일제는 만주지역 조선인을 통제하고 조선인 항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종의 이이제이(以夷制夷)책으로서 보민회 설립을 허가했고 재정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보민회는 주로 일제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남만주지역에 많이 설립되었다. 보민회는 1924년까지 일본영사관과 일본 관동군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특히 일본영사관의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던 오지(奧地)에 설립되어 독립운동단체를 무장 탄압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 일제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밀정활동을 적극 실행했고, 각종 정보조사와 독립운동 탄압에도 종사했다. 이와 함께 만주 전역에 제우교를 확대시키고자 했다.

한편 보민회 간부들은 독립운동단체에 대항하기 위한 무기구입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빙자해 일본 관동청과 비밀교섭을 진행했다. 그 내용은 남·북 만주에 보민회를 조직하고, 보민회원으로 하여금 제우교를 믿게 하며, 보민회가 만주보민주식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이었다. 또 보민회는 재만 조선인 독립운동세력을 전부 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행동은 모두 관동장관 또는 관동군사령관의 지휘명령에 복종할 것임을 밝혔다.

원래 만주보민주식회사의 설립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만주에 이주한 조선인 무산농민에게 토지를 경작시켜 생활을 안정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조선인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대내외적인 선전효과를 노리고 3·1운동 이후 더욱 거세진 만주지역 항일독립운동을 제압하고 만주개척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다. <만주보민주식회사 정관, 만주보민주식회사 취지서>

일제 측으로서는 당시 남만주지역에서 한족회와 대한독립단 등이 활발하게 무장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나 일본영사관 경찰의 활동범위도 일본영사관 소재지와 인근지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독립군의 활동에 직접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보민회를 통해 항일 독립운동세력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자 보민회를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었다. 보민회는 만주보민주식회사를 통해 활동 경비는 물론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도모했다.

보민회는 본부에 총회장 1명, 고문 2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을, 흥경·통화·환인·집안·관전(1924년에는 해룡)·임강·장백 등 7개 지부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2명의 간부를 두어서, 모두 33명의 장 또는 간부가 있었다. 또한 보민회는 산하에 조사원을 운용했는데, 조사원은 주로 봉천독군(奉川督軍) 고문 우에다(上田)와 사카모토(坂本) 일행에 동행하여 각 현에서 독립운동세력에 대한 수색활동을 하거나 수색상의 편의를 제공했다. 아울러 보민회 고문 최정규와 함께 독립운동세력을 수색·체포·탄압하는 행위도 했다.

보민회는 4년의 존립기간 동안 일본군대에 길 안내를 하고 독립운동단체를 공격해 체포하는 등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 또한 보민회는 항일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인을 죽이거나 부녀자를 강간하는 등의 악행도 저질렀다. 끊임없이 ‘토벌’을 감행했고 이러한 성과

를 과장해 일본 영사관으로부터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자 했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보민회원을 원수로 여겨 살해당하는 회원까지 생겼으며, 독립운동단체로부터 323명에 달하는 보민회 회원과 가족이 공격을 받았다.

결국 보민회는 고문 최정규의 독선과 전횡으로 인해 임원들 사이에서 갈등과 내분이 조장되기에 이르러, 마침내 1924년 3월 일제가 해산분배금을 지급하고 해산시켰다. 보민회원 가운데 일부는 1924년 해산 당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보상 차원의 분배금을 받기도 했다. <보민회 공로자 및 관계자 해산수당 지급에 관한 건>

4) 간도협조회

(1) 간도협조회

간도협조회(間島協助會, 1934.9.6~1936.12.27)는 항일독립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1934년 9월 관동군 헌병사령부 연길헌병대에서 설립해 1936년 12월 '만주국 협화회'에 합병되기까지 활동했던 특무외곽조직이었다. 간도협조회의 구성원은 주로 북간도지역에서 사회주의운동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다가 '전향한 인물들로서, 만주 일대의 항일 무장투쟁세력을 체포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만주국'의 치안수비와 일본군의 군사활동을 지원했다. 특히 본부 산하의 특별공작대는 간도협조회 활동에 적극적인 인물을 선발해 조직한 무장집단으로서 공산당조직과 항일부대에 대해 투항을 유도하고 일본관동군의 항일부대 토벌에 협력했다.

간도협조회의 주요 임무는 반공(反共)·반소(反蘇)·친일 사상을 고취하고, 만주일대 공산당 조직 및 항일무장세력의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과 체포 및 단체 파괴, 민심 동향 파악과 사상 선전을 통한 항일세력의 귀순·항복을 비롯해 관동군 토벌대를 따라다니며 항일부대를 토벌하거나 공산당 및 항일조직에 침투해 공작을 통해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이었다.

간도협조회 본부는 간도성 연길시에 위치했고, 본부의 통제하에 각 현(縣)을 단위로 하는 지부와 지부 밑에는 구회를 두었다. 단, 연길현에는 본부가 직접 관할하는 특별 지부와 구회를 설치했다. 구회 밑에는 총반을 설치했고, 다시 총반 아래 총반이 감독하는 반을 두었다. 반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간도협조회는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로 운영되었다. 본부는 각 지부와 구회를 총괄하여

철저히 통제하고, 지부와 구회는 본부 회장의 명령을 절대 복종해야 했다. 지부장은 관할 현 내 민중의 사상 경향과 일반 상황을 감독하고 관할구역의 사업을 관장했다. 구회장은 구내 일반 상황을 조사하고 공산당 세포조직의 발전 상황을 지부나 본부 회장에 보고했다. 보고는 월 1회 혹은 2회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총반장은 관할 각 반장의 보고를 수집해 그가 예속한 지부나 구회에 1주일 한 번씩 보고해야 했다. 반장은 반의 회원 및 근처 민중의 사상 경향과 기타 일반 동향을 조사 감독하여 1주일에 한 번씩 총반장에게 보고해야 했다.

간도협조회의 특별행동조직인 간도협조회특별공작대(間島協助會特別工作隊, 1934.9~1936.12.27)는 간도협조회 본부, 지부, 구회 회원 가운데 가장 충실한 인물들을 선발해 조직했다. 정·부대장을 제외하면 고정 인원과 고정 임무가 없이 필요에 따라 구성된 일종의 특수조직이었다. 사복공작반, 중군공작반 등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특별공작대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특별임무를 띠고 활동했다. 첫째는 이주 조선인 사회에 '진정한 친일분자'를 파견해 친일사상을 선전·배양하는 것이며, 둘째는 중국공산당 동만특별위원회 산하 각 현 위원회의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자를 체포하거나 암살해 항일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항일근거지에 들어가 조선인을 이간시켜 반만(反滿) 항일세력을 와해시키고, 넷째는 일본통치구의 대중과 항일근거지와 연계의 단락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1936년 12월 간도협조회가 협화회에 합병될 때 해체되어 협화회 무장조직에 흡수되었다.

한편 간도협조회는 간도협조회의용자위단(間島協助會義勇自衛團, 1934.10.20~1935.9.5)이라는 군대식 무장조직을 운영했다. 자위단은 만주국의 치안수비와 일본군의 군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였다. 자위단은 단장과 지도관을 책임자로 단의 일체 행동을 관리했다. 단 조직은 서기국·선전조직연락부·정보부·훈련부로 구성되었고 하부조직으로서 2개 분단, 8개 반이 있었다.

자위단 성원은 모두 황색 군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했다. 단장과 지도관은 대위 직함, 분단장은 소위, 교관은 준위, 반장은 상사, 단원은 상등병·중등병·하등병 등의 직함을 가졌으며, 모두 고정적인 월급을 수령했다. 자위단원은 3개월간 군사훈련을 진행한 후 항일무장부대의 활동정황을 수집하는 한편 일본토벌대 및 본부특별공작대에 협력해 토벌에 함께 참여하면서 항일무장투쟁세력을 공격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후에 만주국 경찰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한편 간도협조회는 연변 각 지구에서 활동하는 항일유격대의 근거지를 정탐하고 그 대원들에 대한 파괴공작을 펼쳤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밀정을 보내거나 또는 민생단

원을 이용했다. 특히 당시 중국공산당 동만성특별위원회에 붙어닥친 ‘반민생단투쟁’을 교묘하게 이용해 수많은 조선인 항일운동가들을 제거했다.

민생단(民生團)은 조병상(曹秉相), 박석윤(朴錫胤) 등 거물 친일파들이 조선인 민회와 민족주의 계열인 자치촉진회 등을 연합시켜 일제 통치 아래 이른바 간도 조선족 자치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조직한 친일반공조직이었다. 민생단은 1932년 2월 15일 용정에서 공개 조직되었으나, 일본정부의 제약과 조선인 주민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그해 7월 4일 자진 해산되었다.

민생단 자체는 존립 기간이 짧아 별 위력이 없었으나, 중국공산당에 의해 이른바 ‘반민생단 투쟁’이 벌어지면서 동만지역 조선인 항일운동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민생단 해산 3개월 뒤인 1932년 11월부터 중국공산당 동만성특별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 ‘혁명대오’ 안에 민생단 분자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반민생단투쟁이 전개되었다. 동만지역 4개 현에서 중공 동만특위 조직부장 김성도, 왕청현 군사부장 박동근 등 최소 500명에서 2,000여 명의 조선인 항일혁명가가 일제의 앞잡이로 몰려 무고하게 숙청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혁명가들 다수가 억울한 누명을 썼고, 민생단원으로 몰린 적지 않은 조선인이 일제에 투항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간도협조회는 반민생단투쟁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한 예로 1935년 1월 백초구로 파견된 허기열·허진성 등은 백초구 분회장 한일과 함께 항일연군 식량책임자 한영호를 ‘민생단원’으로 몰았다. 이때 동북항일연군 제2군 독립사 책임자 주진과 박춘 등이 민생단원으로 몰렸고, 동만특위 조직부장인 이상목 역시 민생단원으로 몰리자 결국 변절하고 말았다. 1936년 2월 국제공산당조직인 코민테른 주재 중국공산당 대표부의 지시에 의해 3년 남짓 진행된 반민생단투쟁은 종결되었으나 조선인 항일운동가들에게 그 피해는 너무나 컸다.

(2)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

1930년대 중반 간도협조회와 연길헌병대를 비롯한 각 경찰 및 특무기관의 협조 아래 연변지역 항일근거지는 빠르게 파괴되어 갔다. 이와 같이 간도 일반에 대한 ‘토벌’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관동군 헌병사령부는 간도협조회의 활동 역량을 항일세력이 결집된 동변도(東邊道) 일대에 집중시키고자 했다.

이에 따라 관동군 헌병사령부는 간도협조회 본부 서무부장 김길준, 교양부장 허기락, 산업부장 김우근(金禹根) 등 13명을 선발해 1936년 6월 ‘협화회 동변도 특별공작부’를 꾸

렸다. 본래 협화회는 선무공작사업이란 명목으로 특별공작대라는 무장조직을 운용하고 있었다. 협화회 산하 특별공작대는 1932년 5월 15일 북만(北滿)특별공작대를 편성해 72명을 현지에 파견하면서 활동을 개시했다. 이어 1932년 5월 27일 동변도특별공작대가 만들어져 삼구중차(三口重次)의 인솔 하에 17명이 현지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1936년 8월 이른바 ‘동변도 명랑화’란 이름 아래 전개된 항일세력 토벌사업에 간도협조회 핵심세력들이 파견된 것이다.

1936년 12월 간도협조회는 만주국 협화회에 완전히 흡수되면서, ‘간도성(間島省) 특별공작부’와 ‘삼강성(三江省) 특별공작부’로 재편되었다. 이로써 협화회 특별공작대는 동변도·간도성·삼강성 3개 지역의 공작대로 나뉘어져 이 일대의 항일세력 파괴에 각각 주력했다.

간도협조회 핵심인원들은 이러한 조직 재편에 따라 각각 다른 조직을 통해 항일세력을 탄압하는 길을 걸었다. 간도협조회 본부 회장 김동한 등 9명은 ‘만주국 협화회’ 중앙본부에 편입되었다. 본부 특별공작대 부대장 김하성(金河星) 등 35명은 협화회 간도성 본부에 편입되어 협화회 간도성 특별공작부를 구성했다. 본부 조직부장 겸 특별공작대 대장 김송렬(金松烈) 등 25명은 협화회 삼강성 본부에 편입되어 협화회 삼강성 특별공작부를 구성했다. 본부 재무부장 태리훈(太利勳) 등 11명은 협화회 지방간부가 되거나 개별적 진로를 택했다.

이후 만주 항일무장투쟁의 중심이 북만주로 이동하자 간도성 특별공작부는 1937년 5월에 협화회 삼강성 특별공작부에 통합되었고, 동변도 특별공작부도 그해 12월에 삼강성 특별공작부에 통합되었다.

5) 선민부·한교동향회

선민부(鮮民府)와 그 후신인 한교동향회(韓僑同鄉會)는 일본영사관에서 독립운동단체를 탄압하기 위해 만주 통화현(通化縣) 조선인회 회장 이동성(李東成)을 앞장세워 1928년 10월에 조직한 친일무장조직이다.

본래 이 지역은 무장독립운동단체인 통의부(統義府)로부터 갈라져 나온 참의부(參議府)가 활동하던 지역이었다. 참의부 내의 온건파였던 통화조선인회 회장 이동성과 제5공서장 이기술(李己述), 재무위원장 한의제(韓義濟)와 고동호(高東浩)·독고욱(獨孤旭) 등이 일제에 귀순하자, 일제는 이들을 이용해 이 지역 항일운동세력을 제거하는 데 이용

하고자 했다. 이에 일본영사관 분관은 1928년 10월 통화현 하강산(下崗山) 이도구(二道溝)에서 “중국 관헌 및 다른 불령단(不逞團)의 눈을 피할 필요”로 농민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무력단을 절대 배제하고 어디까지나 온건한 수단으로 자치단체를 조직할 것을 표방”하는 선민부를 조직했다.

일본 외무성 경찰보고에 따르면 선민부는 자치기관 설립이라는 명목으로 상호계(相助契)를 기반으로 참의부 이탈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유례없이 특수한 자치단체”였다고 할 수 있다. 설립 초기 본부는 통화현 북관(北關) 외에 두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단체에 대한 무장탄압을 자행했다. <한교동향회 내정에 관한 건>

한편 이러한 선민부에 대항해 참의부의 잔여 세력은 정의부와 합동해 선민부 타도에 앞장섰다. 이에 선민부는 “영사관 분관의 도움을 떠나 독자적으로 중국 측 관헌에 진정하고 합법적으로 조직해 보호받으” 위장조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헌 측도 양해하고 영사관 분관도 비밀리에 이들을 비호했다. 이런 조직 재정비 속에서 1929년 2월 선민부를 한교동향회로 개칭했다. 이 책에 수록된 관련 자료는 선민부의 결성과정에서 한교동향회로 개편하는 과정과 선민부·한교동향회의 독립운동가 체포·살해 등 각종 친일반민족행위의 죄행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일본 지역

강화도조약 이후 조선인이 최초로 일본에 건너간 것은 19세기 말이며 주로 문명개화에 대한 시찰과 유학, 혹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다. 조선인의 본격적인 일본 이주는 일제의 한국병합 이후였다. 이들은 대부분 도시지역 취업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농업이 목적이었던 만주 이주와는 차이가 있었다. 취업을 목표로 한 이주는 ‘이민’과는 달라서 귀향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본에 취업해 거주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내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곳에 정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러한 ‘재일조선인’, ‘재일조선인 사회’의 형성은 대체로 1920년대 이후로 볼 수 있겠다.

1911년 약 2,500명에 불과했던 재일조선인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경기호황으로 노동력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1차대전이 끝나는 1917년에는 14,502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직업분포를 보면 78%인 11,397명이 노동자였는데, 이들은 오사카(大阪)·후쿠오카(福岡) 등의 공장과 홋카이도(北海道)의 탄광 등에서 노역하였으며, 그 다음은 학생 신분으로서 589명이었다. 거주지역은 오사카가 2,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홋카

이도가 1,706명, 효고(兵庫)가 1,624명, 후쿠오카가 1,386명, 도쿄(東京)가 918명으로, 수도인 도쿄와 공장·광산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일제당국은 자국 내의 노동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재일조선인의 도향을 통제하고자 〈조선인의 여행 단속에 관한 건〉(1919년), 〈조선인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건〉(1924년)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의 구조적 모순은 재일조선인의 일본 유입을 차단하지는 못했다. 일본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저렴한 노동력 수요의 증대, 일제에 의한 토지수탈과 과중한 과세 등 식민지 지배정책에 의해 조선의 농촌은 황폐화되어 결과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조선인은 생존을 위해 만주나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재일조선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1930년에는 약 30만 명으로 늘어났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일제의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도일자(渡日者) 수는 더욱 증가했다. 특히 재일조선인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1930년대 후반 이후 전 시체제가 강제동원과 관련이 있었다. 1937년 중일전쟁 개전 이후 시급해진 노동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제는 1939년 7월 내무·후생성차관 통첩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을 시작했다. 그 결과 재일조선인 수도 급증해 1939년에는 약 100만 명, 1945년에는 240여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8·15 해방 후 ‘귀환’했으나, 일부는 이전부터 일본사회에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던 재일조선인과 함께 오늘날 ‘재일교포’의 바탕이 되었다.

제국주의 본국에 사는 재일조선인은 당연히 일제의 요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재일조선인은 직업·종교·지역·고향 등 다양한 매개를 통해 조직화되고 있었다. 재일조선인 단체는 1919년까지는 주로 도쿄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는데, 대부분 종교·학술·일반사교적인 성격의 단체였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외형상으로는 종교단체이거나 유학생들의 학술·친목단체였으나, 기도회·옹변회 등을 통해 ‘현상 파괴’, ‘압제 전복’ 같은 반일사상을 전파하고 있어서 일제의 주요 감시 대상이기도 했다.

특히 재일유학생은 상호 간의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는데, 1919년에는 도쿄 유학생을 중심으로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으며,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북성회(北星會)·일월회(一月會) 등의 사상단체를 비롯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재일본조선청년동맹(在日本朝鮮青年同盟)·신간회(新幹會) 지회 등을 조직했다.

한편 수적으로 재일조선인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노동자들은 민족차별과 노동수탈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 재일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과 권익을 위해 각종 노동단체에 가입

했고, 선진적 사상을 가진 노동자들은 항일민족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일제는 이들 노동자가 공산주의와 같은 급진사상이나 반일조직에 가담하는 것을 극히 경계했다.

이와 반대로 1920년대 이후에는 상애회와 같이 일제의 시책에 협력하며 재일조선인의 항일민족운동을 탄압하고 ‘황민화’에 앞장서는 친일단체도 생겨났다. 도쿄뿐 아니라 오사카 등 조선인이 거주하던 다른 지역에서도 상애회(相愛會) 지부를 비롯해 친일 성향의 조선인 단체가 결성되기 시작했다.

일본 경찰당국은 일본 각지에 다양하게 등장한 재일조선인 단체를 ‘극좌 및 좌익계’·‘사회민주주의계’·‘국가주의 내지 국가사회주의계’·‘무정부주의계’·‘민족주의계’·‘용화친목계 기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단체의 동향을 감시했다. 재일조선인 단체 가운데 이른바 ‘용화 친목 기타 단체’가 가장 많이 조직되었는데, 1931년에 존속한 656개의 조선인 단체 중 약 70%인 456개 단체가 용화친목기타 단체였다. 이들 ‘용화 친목 기타’ 단체는 1931년 현재 오사카·도쿄지역이 활발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아이치(愛知)·후쿠오카(福岡)·교토(京都)·효고(兵庫) 지역의 조직 활동이 활발했다.

그렇지만 단체가 일본과의 ‘용화’를 표방했다고 해서 그 단체원들 모두가 곧바로 ‘친일 반민족’적이었다고 규정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제국주의 본국으로 이주한 식민지인인 조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권익보장이라는 절실한 이유 때문에 합법 영역에서 용화를 표방한 단체를 만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용화단체를 표방했다 하더라도 각 단체별로 그 실상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화단체 일반을 친일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러나 조선인이 다수 거주 혹은 노동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의 재일조선인 정책 특히 동화정책에 부응해 ‘내선용화’를 전면에 내걸고 활동하거나, 일본 국가주의 사상을 옹호하거나, 또는 관이나 경찰조직과 연계해 조선인을 강압적으로 전시체제 협력 동원하는 데 관계한 단체 등은 친일적 혹은 반민족적 성격을 지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용화 친목 기타’ 단체들은 조선인 보호를 표면적인 명목으로, 재일조선인의 ‘동화·황민화’를 목적으로,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당국이나 일본인의 후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결성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31년 존속한 656개의 단체 중 약 70%인 456개 단체가 용화친목기타 단체였다. 이와 같이 단체들이 난립한 결과 그 존속기간도 짧았으며, 직업적인 친일 성향의 인물들에 의한 단체 주도권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재일조선인의 참정권 행사가 가능해지자, 중의원 혹은 지역의회나 단체장 출마를 목적으로 단체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1939년 이후 일본당국에 의한 재일조선인 통제조직인 협화회 결성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됨에 따라 일반 용화친목기타 단체에 대한

지원도 감소되어 대다수 단체들이 소멸하거나 협회로 편입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일본지역 관련 자료들은 이른바 ‘내선융화’나 ‘황민화’를 표방한 재일 조선인 친일단체와 이를 주도한 핵심 간부들의 활동과 논설 등을 가려 뽑은 것이다.

조선사상통신사 동경특파원인 박상희(朴尙僖)가 『조선사상통신(朝鮮思想通信)』에 1927년 11월 7일부터 1928년 1월 18일까지 50회로 연재한 「동경조선인제단체역방기(東京朝鮮人諸團體歷訪記)」 가운데 자강회(自彊會, 이사장 민석현), 상애회(相愛會) 총본부(회장 이기동, 부회장 박춘금), 재일노동일심회(在日勞動一心會, 회장 김운수), 황인사(黃人社, 대표 이동화) 등은 내선융화와 내선친목 등을 표방하면서 1920년대 재일 조선인 사회를 체제내화하거나 친일로 이끈 대표적인 단체이다. 박상희는 이 방문기에서 “조선민중은 일한병합 20년이 지나서도 정신적으로 치유 받지 못하고 민족적으로 이해를 받지 못해 지금 사상적으로 반대 방향을 걷고 있음에도 (일본인들은) 이를 잊고 전 국민적으로 중국문제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중국을 중시하고 조선을 등한시하는 것을 먼저 비판했다. 이어서 자신이 방문한 단체와 대표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단법인 자강회(自彊會)는 1924년 11월 15일 동경에서 천도교계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일종의 유학생 지원·장학재단이다. 자강회는 첫째, 고등교육 유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 둘째, 고학생을 위한 직업 알선이나 편의 제공을 내세운 사회사업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이사장은 민석현(閔奭鉉), 이사는 박사직과 조종호인데, 모두 천도교 동경총리원 간부들이었다. 이사장 민석현은 1916년경부터 천도교교구 손병희와 동거하면서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는 1924년 일본 중앙대학 경제과를 졸업한 후 천도교 동경총리원 간부으로 있으면서 자강회를 설립했다.

재일본 조선인노동자 구호단체를 표방하면서 결성된 상애회는 박춘금(朴春琴)이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사주를 받아 1921년 12월 23일 도쿄에서 결성했다. 회장은 이기동(李起東), 부회장은 박춘금이였다. 동경에 상애회 총본부가 있었고 지방 주요 도시에는 지방 본부 또는 지부가 설치되었는데, 박상희는 위 방문기를 통해 상애회를 “관변의 신임이나 응원이 가장 두텁고 가장 널리 알려진 단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가장 ‘친일적’인 단체라는 의미이다. 1927년 당시 회원 총수가 10만여 명이었으며, 사이토 총독이나 도야미 미츠루 등 40여 명의 명사를 고문으로, 관계 요로의 인사 수 명을 상담역으로 두고 있는 ‘유명한 내선융화단체’라고 소개되고 있다. 아울러 상애회가 운영하는 무료숙박소, 무료직업소개소, 학생기숙사(상애관), 조선일요학교, 인사상담부, 상애료원(相愛療

院)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상애회는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친일조직으로서 노동상애회(勞動相愛會)라고도 했는데, 처음에는 상구회(相求會)라는 구제기관에서 출발했다. 3·1운동 이후 일본으로 유입되는 조선인 노동인구가 급증하자, 일제는 이들의 사상을 통제·단속할 목적으로 상애회를 후원했다. 표면적으로는 ‘인류상애의 정신과 공존공영에 입각한 일선융화, 민족적 차별 철폐,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정신적 교화와 경제적 구제’ 등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인 노동자를 학대하는 폭력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23년 9월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때 조선인 노동자 300명으로 노동봉사대를 조직해 일본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사건 뒤처리를 맡음으로써 일제의 신임을 크게 얻어 세력을 확장했다. 이후 일제의 지속적인 후원 아래 조직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고, 조선인 노동자와 여공들을 착취 학대하는 한편, 일본인 기업주의 앞잡이로서 노동쟁의를 탄압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제와 결탁해 친일파의 유지연맹을 비난한 송진우(宋鎭禹)를 폭행하거나 1924년 7월 하의도(荷衣島) 소작쟁의 당시 농민 측 청년회를 습격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친일주구와 청부폭력배의 두목 역할을 했다. 상애회는 1938년 ‘일본제국 협화회(協和會)’로 통합되면서 해체되었다. <상애회 총본부의 사업 시설의 개요>

재일노동일심회는 “회원의 실제 수와 성실한 내용 면에서 동경 제일의 조선인 노동자 단체”였다. 회장 김윤수(金潤秀)는 조선 경성제피주식회사 전무이사과 경성금융합자회사 대표를 역임한 사업가였다. 그러나 사업 실패 후 1925년 여름 일본으로 건너가 1925년 8월 14일 자유노동자 26명을 모아 관동(關東)노동일심회를 조직하면서 재일조선인 노동계에 발을 내딛었다. 김윤수는 한때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에 가입해 노동총동맹 관동연합회 중앙집행위원이 되기도 했고 사상단체인 조선민중회 대표위원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1926년 8월 15일 ‘순수 노동운동’을 표방하며 관동재일노동일심회를 이끌고 재일조선인노동총동맹을 탈퇴했으며, 이후 일심회는 일제당국으로부터도 순수한 노동자 결합단체로 인정받았다.

이후 김윤수는 조직의 전국화를 꾀해 재일노동일심회로 개칭해, 1927년 10월 말 현재 회원 지부를 포함한 회원 5,162명에 이르렀다. 회원 대다수는 경상남북도 출신이며 일본인 노동자 200여 명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는 일본인 노동운동보다 활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회원 중에 보통선거 유권자가 1,900명 정도 되고 이에 일본인 측 노동자의 동정과도 이해가 있”어서 정촌(町村) 의원의 선거 정도는 좌우할 수 있는 실권을 갖게 되어, 이러한 기반은 재일조선인이 낮은 차원에서나마 일본사회 내 정치에 입문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황인사(黃人社)는 “말로 붓으로 내선융화를 주장하는 단체”이자 “동인 몇 명이 오직 유세와 문필로 내선(內鮮) 양 민족의 이해 촉진과 황색인종의 문화 양양”을 하는 단체로서, 이 시기 제일조선인 단체 중 친일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조직이었다. 황인사의 전신은 현정구락부(顯正俱樂部)였는데, 현정구락부는 1921년 4월 8일 이동화(李東華·李慶奎·李家實, 1893~?), 김창준(金昌俊), 박봉신(朴奉信) 등이 “회원의 상호 공조로 일선관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1922년 이동화와 김창준의 의견 충돌로 현정구락부는 유명무실해지자, 이동화는 따로 황인사를 조직하고 기관지 『황인시론』을 발행했다. 김창준은 혼자 지방 유세를 다니며 일선융화(日鮮融和)를 주장했다.²⁾

이동화는 1921년경부터 일본 각지를 순회하며 내선융화의 유세활동으로 수입을 유지하고 때로는 사례금이나 원조금을 강요해 “고마우면서도 귀찮은 내선융화론”이었다고 한다. 또 박상희는 이동화를 “동기가 불순한 직업적 융화론자”로 묘사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인 측의 맹목적 옹호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동화와 황인사를 비판하고 있다. 이동화는 1934년 10월경 제일조선인 유력자들을 모아 ‘대일본주의 및 내선융화 철학’을 주창하면서 내선융화단체 간의 상호연대를 이루기 위해 조선신흥동맹 창립준비위원회에 참가했다. 이 단체는 1935년 1월 동아신흥연맹으로 개칭·개조되었으며, 이동화는 상임위원이 되었으나 신임 위원장인 홍준표(洪浚杓)를 배척하다가 제명당했다.

또한 이동화는 정치활동에도 힘을 기울였다. 1937년에는 이경규(李慶奎)라는 이름으로 도쿄시 의원에, 1942년 4월에는 중의원 선거에, 6월에는 다시 동경시 의원에, 마지막으로 1943년에는 동경도 의원 선거에도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화는 친일융화사상을 설파하는 정력적인 강연 및 저술활동을 하기도 했다. 1923년부터 1924년에 걸쳐 조선과 일본을 오가면서 ‘아시아 동맹 실현’에 관해 강연하고, 1928년에는 내선문제에 관한 강연을 했다. 1929년 「내지와 조선인 간의 결속한 미담」을 동민회 기관지 『동민』에 기고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황인사를 통해 『국방과 조선인』(1933), 『전시하 우리의 진로』(1933), 『민족공동사회의 제창』(1934), 『척무성 폐지인가 총독부 폐지인가』(1934), 『일어나라! 조선인 가라! 만주국』(1936) 등의 일본어 저술을 출판했다. 또 1941년 9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모두 7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근로이념과

2) 1925년 일본인 우익단체인 동양연구회 인사들의 후원으로 “아시아 문화의 작흥 및 민족의 공존 공영을 꾀한다”는 목적 아래 민족경애회가 결성되자 이동화도 여기에 제휴했다. 현정구락부 설립자의 한 사람인 박봉신은 ‘아세아여자공학회’를 설립했다가 실패한 후 민족경애회에 간부로 참여해 결국 세 사람은 다시 제휴했다. 그러나 이후 민족경애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이동화가 이끄는 황인사만이 끝까지 남아 활동했다.

반도인」을 연재하기도 했다.

1920년대 이래 적극적으로 재일 조선인 사회를 친일로 이끌어갔던 친일 단체의 간부의 대표격으로는 박춘금과 홍준표를 들 수 있다. 박춘금은 재일조선인 최대 조직인 상애회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1932년 일본의회 대의사(代議士, 오늘날의 국회의원)로 선출된 인물이다. 그는 동화주의를 열렬하게 제창하고, 상애회 조직을 이용해 친일의 최선봉에 나섰다. 홍준표는 동아신흥연맹과 동아연맹의 대표로서 국가지상주의를 표방하며 ‘일본정신’을 고창했다.

상애회의 실질적 책임자인 박춘금은 일본뿐 아니라 조선과 만주를 통틀어 손꼽히는 특급 친일파였다. 조선인으로서 일본제국의회 중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은 모두 6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당선된 사람은 박춘금 1명뿐이었다. 박춘금은 1932년과 1937년 2회에 걸쳐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8년간 ‘일본제국의회’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박춘금의 활동은 당시 조선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었다. 그가 유일하게 일제당국과 일본인의 ‘인정’을 받아 두 번이나 당선된 데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하에서 어느 누구보다 친일반민족적 행위를 시종일관 강력히 전개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중의원 활동뿐만 아니라 상애회·각파유지연맹·대의당·대화동맹 등을 통해 일본과 조선을 넘나들면서 각종 친일반민족적 활동을 주도했다.

박춘금의 친일 논리는 철저한 동화주의였다. 이 책에 수록된 〈우리의 국가 신일본—조선동포의 불안과 곤궁을 말해 조야(朝野) 제현(諸賢)에 호소한다〉라는 글을 보면, 당시 박춘금이 자치론을 반대하고 철저한 동화론을 주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원색적인 이 글에서 그는 “우리 조선인이 대일본제국을 사랑함에 어떤 어색함이 있을 것인가. 이 대일본 제국의 국부 지존에 대해 받들고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의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는 실로 우리의 신조이고 감정의 외침이다”라고 해, 일본에 충성하는 길이 곧 조선인의 의무라고 주창했다. 또 그는 조선의 경우 동화가 현저히 진전되고 있으며 “위정당국이 시정의 근본 방침을 확립하고 동화정책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철저히 주지”시켜야 하며, “조선인으로서 내선민족 각 이해의 일치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 사회생활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면 내선의 융화도 동화도” 어려울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철저한 동화, 곧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이 없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인이 완전히 일본인이 됨으로써 일시동인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동화의 핵심이며, 일제 당국에 “완전히 일본민족으로 만들려는 각오”를 촉구했다. 특히 자치론은 결과적으로 조선 독립의 욕망만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반대했다. 조선 내 기반이 없는 박춘금에게 자치론은 자신이 설 기만을 상실하는 것이기도 했다. 또 그는 ‘직업적 배일선인(排日鮮人)’ 즉 항일운동가에 대한 철저한 배격을 주장했다.

1931년 7월 발생한 만주 만보산사건과 관련한 박춘금의 연설문에서는 조선인은 일본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일본이 만보산사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에 배상할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1938년 일본의회 중의원 신분으로 조선에 건너온 박춘금은 조선에서 육군특별지원병제가 실시됨을 축하하면서 “대화민족(大和民族)의 정신을 완전히” 넣어 “하루 속히 훌륭한 일본국민”이 될 것을 주장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만보산사건에 관한 조선인 결의대회, 전시의회(戰時議會)와 나의 연설>

홍준표는 국가지상주의와 ‘대화혼(大和魂)’에 입각한 내선일체를 주장하는 국가지상주의 친일파이다. 1873년 경기도 여산군에서 출생한 홍준표는 1896년 일본으로 건너가 1907년 제교원 검정시험에 합격했다. 1919년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보급하고 일본인과 동화하기 위해서는 어학교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각지를 순회하며 ‘제국내선어학원 설립운동’을 했다. 신문 및 격문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일제에 의한 한국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특히 3·1운동 등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무용론과 내선융화론을 강조했다. 그의 <미국 국민에게 고함-존경하는 미국 국민에게>는 반일적인 재미한인에게 미국이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는 다소 특이한 글로서, 1920년대 초반 홍준표의 ‘광적’인 친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1926년 홍준표는 일본제국의 팽창주의를 주창하는 나가사키(長崎) 아시아민족대회에 박춘금, 이기동과 더불어 조선대표로 참가했다. 또한 그는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여러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그가 1930년 사이토 총독에게 올린 <조선사상대책단안>은, 총독에게 조선인 반일단체를 박멸할 것을 주장하고 그 방법을 제시한 극렬한 반민족적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조선의 각종 반일단체를 열거하면서³⁾ 이를 ‘불평분자의 집합단’이자 ‘분란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의 책동에 대항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각종 교화·통제 기관을 설치할 것과 “조선 팔도만이라도 밀정기구를 조직해 그들을 정찰, 감시, 정복할 것. 조선 8도 초월하는 곳에는 총독부 파견원으로 만주 각 요지에 배치, 불평분자의 침습(侵襲) 방지”해야 한다며, 조선인만의 밀정기관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글 말미에서 자신을 “무사시(武藏)의 낭인(浪人)”이라고 소개하는 데에서 그가

3) 사실상은 모든 분야의 조선인 단체 거의 전부를 들고 있다.

일본주의에 얼마나 철저히 물들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수록된 <조선신흥동맹의 개칭 및 분열>은 홍준표가 조직한 동아신흥연맹의 임원, 강령 등을 보여준다. 1933년 11월 24일 이동화 등 33명이 모여 ‘조선신흥동맹’을 결성하고 12월 16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 간부들 사이에 조직 문제로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가운데 홍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때 위원장 홍준표는 자신의 지론에 입각해 국가지상주의를 표방하는 ‘일본정신 선양’ ‘내선만(內鮮滿) 일치단결’을 주창하고 이 자리에서 단체명을 ‘동아신흥연맹’으로 바꾸었다. 이후 이동화 등이 조직 운영에 불만을 품자 추방하고 홍준표 자신이 독단적으로 조직을 이끌다가 결국 신망을 잃어 1935년 4월에 사임하였다. 그는 곧장 독립운동을 배격하고 대일본주의를 주창하는 또 다른 동아연맹을 개별적으로 결성해 조선민족이 일본에 융화할 것을 강조했다.

1930년대 중후반 이후 일본정부는 전시체제를 대비하면서 민간친일기구를 통한 재일조선인 통제에서 국가가 직접 재일조선인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재일조선인 단체를 모두 해체하고 이를 협화회로 흡수 통일해 전시체제가 재일조선인을 철저히 전쟁의 소모품으로 동원하고자 했다. 이는 상애회 등 일체의 조선인 단체가 협화회로 흡수 통합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오사카부(大阪府) 내선융화사업조사회에서 1936년에 발표한 <내선융화 대책>은 일제가 전시체제가 재일조선인들을 어떤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오사카지역은 일본 내에서 재일조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한 곳이었다. 그만큼 재일조선인 단체의 수도 많았고 일제 당국의 감시도 심했다. 이 책에 수록된 <내선융화 대책>은 향후 재일조선인 융화단체에 대한 근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융화대책을 3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1기는 일제의 한국병합에서 1923년 9월 관동대진재까지, 제2기 관동대진재에서 내선융화사업조사회가 설치된 1924년까지, 제3기는 내선융화사업조사회 설치 이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자료의 핵심은 제3기를 맞이하여 재일조선인 단체의 통제를 융화단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 동화정책을 기조로 융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융화의 방향은 “재주 조선인 특유의 속성을 교정해 생활의 개선 향상과 일본화(內地化)를 꾀하고 나아가 지성보국의 정신을 함양해 광명을 향유함과 동시에 폐하의 적자로서 방가(邦家)의 용성을 부익(扶翼)할 것을 근본 뜻”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정에 사로잡혀 …… 방치하거나 너무 준엄해 장래에 화근을 남길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하여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대책안은 조선인의 일본 이주를 제한해 조선인이 너무 많아 통제하기 어려운 것을 막아야 하며, 우량 용화단체로 하여금 연맹을 조직하도록 하고 연맹에 불참하는 용화단체들은 해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향후 협화회로 통합되는 재일조선인 용화단체의 강제 통합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단체들을 엄중하게 단속하고 단체 신설을 금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장려를 표방하되 “국민정신 함양 및 생활방식의 일본화”에 힘쓸 것을 강조해 내선일체 교육을 주창하고 있다. 보호 시설에도 반드시 교화정책 결들이기를 권고해 조선인의 모든 방면의 정책은 내선일체의 확고한 용화로 나아갈 것을 꾀하고 있다.

요컨대 다가올 전시체제를 대비해 재일조선인에 대한 통제를 민간 친일단체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통제할 것을 주장해, 향후 협화회를 통한 재일조선인 단체의 흡수 통합을 예고한 것이라 하겠다. 또 전시체제가 재일조선인의 내선용화에 대한 근본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3. 러시아 연해주 지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조선인 친일단체에 대해서는 1910년대 전후 즉 제정러시아 시기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1920년대 전반기 이른바 일본의 시베리아출병기로 나눌 수 있다.

1) 제정러시아 시기(1910년 전후)

1910년 경술국치(일제의 한국병합)를 전후해 연해주 일대(쁘리아무르 주)는 조선인 이주민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고,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항일의병들도 활동하고 있었다. 일제는 일진회 지회인 ‘공의회(公議會)’와 일본 밀정을 통해 이 지역 조선인 사회를 감시·통제하고 항일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다.

이 책에 수록된 <공의회에 대한 보고>는 지금까지 국내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것으로서,⁴⁾ 1910년 경술국치(합병)를 전후 시기 연해주 일대(쁘리아무르 주)에서 활동하던

4)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2007년도 조사보고서』 1권을 통해 작년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의병들을 제거하려는 일제의 공작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공의회는 제정러시아 시기에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일진회 연해주지부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단체이다. 1908년 경 연해주 세명거우에서 조직되었으며, 회장은 조선의 관리 출신으로서 1902년 연해주로 이주한 김성수였다. 공의회의 임시규약을 보면 동포의 단결과 조국의 해방을 위한 일치단결 등을 표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이 뿐만 아니라 실제 목적은 “의병의 계속되는 강압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는 것이며, 전반적으로 의병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즉, 조선인 의병의 상황을 조사하여 이를 일본 측에 전달하는 것도 공의회의 목적이었던 것이다.

회장 김성수는 일진회의 전권을 받아 공의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회원 180명 모집을 목표로 1908년 11월 현재 약 60여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김성수는 직접 일본군에게 조선인 의병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공의회는 회원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면서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러시아인의 정세와 조선인 의병 활동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위임했다. 또한 수집한 정보를 조선 함경북도 회령지역에 들어가 일본군에 보고하는 임무도 맡겼다.

공의회 조직은 1909년 초 러시아 연해주군관구 헌병대에 발각되어 회장과 회원 수명이 체포되었다. 일제가 강압적으로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기 직전에 연해주지역에 거점을 가진 의병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조선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대표 사례를 이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일제는 연해주지역 의병부대와 항일운동단체들의 동향을 탐지하고 그 활동을 파괴하기 위해 조선인 밀정을 고용해 정보를 수집했다. 조선인 밀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 그 상세한 파악을 하기는 어렵다. 이 책에 수록된 〈쁘리아무르주 지역 일본 측 비밀요원 명단〉은 비록 명단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밀정으로 활동했던 조선인의 구체적인 인명 정보와 이들이 밀정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의 액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자료에는 1) 중국 훈춘 주재 일본영사관에 고용되어 훈춘과 노보키예프스크 지역 일대에서 활동한 조선인 나해룡(羅亥龍) 등 11명, 2) 노보키예브스크 지역에 상주하면서 1)항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전달한 조선인 윤대동(尹大同) 등 7명, 3) 노보키예프스크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군대가 포진해 있는 장소들을 따라 시베리아로 옮겨 다닌 조선인 김래원(金來元) 등 8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노보키예프스크는 중국-러시아 국경을 사이에 두고 훈춘과 마주보는 지역이다. 이들 영사관 밀정은 주로 20~40대의 연령층이었는데, 특히 1)항의 인물들은 대부분 70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은 직접 정탐에 나서거나 노보키예프스크 및 기타 연해주지역의 조선인 정보원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영사관에 보고했다. 주요 인물로는 김진오(金鎭五)·이정구(李正九)·김용언(金龍言)·김집현(金集現)·안평도(安平道)·황천일(黃千一)·최선보(崔先甫)·차오장(車五將)·지운경(池云景) 등이 있었다.

2) 시베리아 간섭전쟁 시기(1920년 전후)

1920년대 초는 1917년 러시아혁명과 이를 분쇄하려는 다국적 간섭군의 시베리아 출병이 있었다. 1917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1월에 러시아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일대는 혁명과 반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었다. 일본과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군대가 '적백내전(赤白內戰)'에 끼어든 '혁명간섭전쟁'이 곧 '시베리아 출병'이다. 일본 또한 거류민 보호 등을 이유로 시베리아에 군대를 파견했다. 한편 조선인 독립군은 일제의 강력한 군사 공격으로 인해 연해주 일대로 물러나 백위군 또는 적위군과 연계해 재무장하여 일본군에 대항했다.

일본은 1918년 4월 5일, 일본군 선발대 10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에 급파하여 '국제간섭군'에 가담했다. 명분은 러시아지역 일본 거류민단을 보호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명분일 뿐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러시아에 제공한 총포 등 전략물자가 독일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백군을 도와줄 경우 공산혁명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다. 여기에다 오스트리아군에 징집되었다가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혀와 재판성된 외인부대인 '체코군단'의 구출까지 명분에 포함시켰다. 일본은 체코군단의 퇴로를 보호한다는 명분까지 포함하여 73,000명의 병력을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시베리아 파병을 단행했던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에 밀집한 조선인 무장독립세력을 궤멸시키려는 것이었다. 특히 조선인 독립군이 적군(赤軍)과 연결되어 항일운동과 적색혁명이 겹쳐 온다면 일본으로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두 9만여 명에 이르던 국제간섭군의 시베리아 출병은 실패하고 말았다. 적군 세력이 더 강했고 러시아 민중들이 적군 편에 섰기 때문이다. 결국 각국은 체코군단이 안전하게 철수한 1920년에 군대를 철수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이후에도 시베리아와 만주 일대에 대규모 병력을 그대로 주둔시켰다.

일제는 이 시베리아 간섭전쟁 전후부터 이 지역의 조선인 사회를 통제하고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하고자 조선인 스파이들을 배치하고 친일적 성격의 민회를 조직했다. 이는 조선인 항일세력에 대한 정탐과 토벌 그리고 소비에트 러시아에 대한 정탐과 공작에 조선인을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조선인이 다수 거주했던 니콜스크지역의 간화회(懇話會)와 포세예트지역의 조선인 민회 관련 자료를 통해 그 실상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군이 이 지역에서 철병하면서 조선인 친일조직은 사실상 소멸했다.

이 책에는 1920년 청산리·봉오동 전투 등 항일무장투쟁이 정점으로 치닫던 시기를 전후해 연해주 지역 조선인들 특히 친일적 성향의 민회와 관련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이 지역은 훈춘사건과 간도출병으로 인해 조선인 독립군이 연해주지역으로 이동해 있었는데, 러시아혁명과 반혁명 와중에 이들은 적군 혹은 백군에 가담해 혁명에 휩쓸렸지만 다른 한편 이를 계기로 무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일제는 1918년 시베리아 출병 후 백위파(白衛派) 정권을 성립시키고 연해주지역의 조선인 사회를 간섭·통제했다. 일제는 소비에트 러시아와 적위파(赤衛派)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고 조선인 항일운동과 러시아 적군의 결합 등을 염려해 이 지역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특히 일제는 조선인이 거주하던 블라디보스토크, 포시예트 지역에 조선인 민회를 조직하거나 이용해 러시아의 동향을 수집하고 나아가 이 지역 조선인 독립군들을 궤멸시키고자 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설립의 건,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그런데 1920년 초 1월 러시아 극동 각 지역에서 볼셰비키가 지도하는 ‘적색 빨치산부대’가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섰고, 백위파 군대 내에서는 병사들의 반란이 속출하는 등 백위파 지방정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했다. 연해주에서는 1월 31일 혁명파의 반란이 일어나 백위파 로자노프 지방정권이 전복되었고, 중간파·혁명파 연립정권이 수립되었다. 이 연립정권은 일본군이 아직 도처에 주둔해 있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선인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운동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에 일제는 이 연립정권을 전복하고 연해주에서의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 1920년에 이른바 ‘4월 참변’을 일으켰다. 일본군이 연해주지역의 러시아혁명군과 관공서를 대대적으로 공격·방화하고 러시아혁명군과 조선인 독립운동 지도자들을 검거하고 학살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연해주 연립정권은 붕괴되었고, 이를 대신해 일본군의 꼭두각시인 ‘백위파 정부’가 다시 들어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본군의 지위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시베리아 출병과 ‘4월 참변’을 연이어 겪은 조선인은 공포심과 함께 일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더욱 키워나갔다. 당시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조선인은 조선·만주·상해의 독립운동

가들과 연계를 맺고 있었으며,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여러 결사를 조직하고 신문을 발행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고 무기와 탄약을 구입해 국경지대의 독립운동단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었다. 일부는 러시아혁명군에 입대해 일본군과의 대항전선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선인의 저항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일제는 블라디보스토크 거주 조선인에 대한 단속과 회유방침을 결정했다. 1920년 3월 블라디보스토크 일본군 파견당국은 “현재 블라디보스토크 일대 독립운동가들의 항일 열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우선 일격을 가해 일본군대의 위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일본군에 대한 외경의 마음을 갖게 한 후 점차 회유할 것”을 결정했다. 이 책에 수록된 블라디보스토크 일본군 파견 사령관 오이 시게모토(大井成元)의 〈조선인 단속에 대한 규정〉을 통해 그 구체안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인 단속은 기본적으로 일본군 사령관이 담당하며 그 실행은 블라디보스토크파견군 헌병대사령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는 군사력을 통해 조선인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군 예하 부대와 특무기관은 조선인 단속에서 가능한 한 원조하며 조선총독부와 총영사관·영사관·조선 파견관은 그 업무에 협조·관여하도록 규정되었다. 〈조선인 단속 및 회유 방침에 관한 건〉

이러한 방침에 따라 연해주 각지에서는 친일적 성격을 띤 조선인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1920년 4월 ‘신한촌 조선인 거류민회’를 필두로 각지에서 민회·거류민회·간민회·간화회 등의 명칭으로 조직되었다. 남우수리스크 슬라반카에는 김종수(金宗洙)의 주도로 친일 성향의 상신회(相信會)가 조직되기도 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조선인 민회 설립의 건,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당시 조직된 친일 성향의 조선인 민회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니콜스크 간화회(懇話會)를 들 수 있다. 일제는 ‘4월 참변’ 당시 니콜스크-우수리스크시 부시장이었다던 최재형 등 주요 인사들을 살해한 후 이 지역에 친일 성향의 간화회를 조직해 조선인을 회유·통제함으로써 연해주 지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니콜스크 간화회는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신시민보(新時民報)』를 발간했는데, 이는 니콜스크의 일본특무기관이 매월 300원씩의 예산을 보조함으로써 가능했다. 또 니콜스크지역에 설치한 총 22개의 간화회 지부는 모두 일본영사관의 ‘보호 지휘’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표방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니콜스크 거주 조선인 사이에는 ‘불온’한 배일 감정이 여전히 팽배해 있다고 일제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연해주 간화회(懇話會) 회칙, 조선인 민회 보조비 기타에 관한 회보(1921), 조선인 민회 보조비에 관한 회보(1922), 조선인 행동에 관한 건〉

이상과 같은 연해주 지역 친일 성향의 조선인 민회들은 그 수명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 러시아혁명 이래 단절되었던 소련과 일본 간의 국교회복을 위한 예비회담이 1921년 7월 2일부터 7일 사이에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1921년 8월 26일부터 1922년 4월 16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러시아 극동공화국 외상 유린과 일본 측 대표인 블라디보스토크 파견군 정무부장 마츠시마(松島肇) 사이에 본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대련회의에서는 일본군의 시베리아 철수 문제가 논의되었다. 일본군의 철수를 우려한 친일적 민회 간부들은 일본군 철수 후에도 조선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운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22년 10월 마침내 일본군이 연해주에서 철병하고 볼셰비키가 연해주를 장악함에 따라, 그간 일제의 비호 아래 있던 조선인 민회나 학교 등은 모두 폐쇄되었고 니콜스크 간회회 간부들도 지역사회에서 배척당하는 등 연해주 조선인 사회는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나갔다.

* 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나 일부 내용은 본 위원회의 취지와 다를 수 있음.

I. 중국 지역

1. 일본 외무성 소속 조선인 경찰

1) 간도 총영사관 관내 경무 및 치안 상황

(상략)

(3) 우리 경찰기관의 비적공비(匪賊共匪) 소탕 검거 상황

전 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적공비의 끊임없는 도발과 폭행에 직면한 우리 경찰기관은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파견군 및 만주 측 경비기관과 협력하여 이의 소탕 검거에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를 위해 올해 1월 이후 우리 경찰관으로 순직한 자 12명, 부상자 18명을 내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匪徒)의 발호는 쇠퇴하지 않아 오지 주민 중 피난 인양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파견군과 만주국 측 관헌과 협력하여 8월 이후 관내 각지 37개 소(1,121명)에 인민자위단을 조직하여 비적공비의 경계·검거를 맡게 하여 좋은 실적을 올렸다. 이 조직 교육 지도에 관해 각 현 보좌관의 심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일반민중이 깊이 감사하는 바이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임시경찰 요원으로 조선인 15명을 고용하여 무장훈련을 받게 하고, 본관 경찰서 지휘하에 공비가 계속 출몰하는 지역을 돌며 검거 단속 및 농민 수확물의 현지 보호를 담당하게 하였는데 출동 회수가 20회, 총 40일간 연인원 506명이었으며, 그 사이 공비 95명을 검거하고 장총 18, 군도 9, 폭탄 4, 불온문서 8,236부를 압수하였다. 또한 일반 관하 경찰기관은 모두 같이 파견군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검거에 힘쓴 결과 연말에 이르러 비적의 세력이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우리 경찰기관의 공비 검거 상황은 별표와 같다(표 생략, 1932년 중 검거 인원은 2,485명, 압수한 것으로 장총 27, 폭탄 20, 창 16, 권총 13개가 있음).

또 한편으로 문서 또는 강연으로 사상 선도에 힘쓴 결과 12월 말 현재 자수 신고자가 111명에 달했다. 이들은 곧 실시될 공비귀순취급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점차 호전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들 중 상당수가 사무 개시와 함께 귀순의 뜻을 보이며 개과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전 : 間島總領事館管内警務並治安狀況, 1933년 1월 18일,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0, 고려서림, 2001년, 85~87쪽〉

2) 간도 출병에 관하여

제2회 마적습격사건 및 간도출병

(중략)

8. 1920년 10월 3일 재간도 사카이(堺)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内田)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함경북도 지사로부터 동 도 경찰관의 훈춘(琿春) 파견에 관한 전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답하셨습니다. 훈춘에는 이미 군대가 파견된 모양이므로 귀 도로부터 응원 경찰관의 파견은 영사의 요구에 의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조사에 관해서는 이번 훈춘 사건을 계기로 간도 전반에 걸친 적극적 대책에 관해 지금 연구 중이므로 일반 방책이 결정되기까지는 구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사를 훈춘영사와 의논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9. 1920년 10월 4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훈춘사변에서 일본인만 학살 혹은 방화 피해를 입고 특히 부녀자와 소아까지 살해된 데다 과격파 러시아인이 마적을 지휘했다는 정보가 전해져 간도 각지 거류민은 심히 동요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유일한 피난장소로 생각되는 영사관이 먼저 피해를 입게 되면서 생명재산을 의탁할 곳이 없어 혼란에 빠졌고 피난 방법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자위단의 활동으로 가능한 한 경계를 하고 있지만 이 지방의 조선은행과 같이 만일 우리 군대가 출동하지 않는다면 영업을 크게 축소하거나 폐점할 수밖에 없어 본점으로부터 조치책을 받을 예정이지만 조선은행이 폐쇄되면 이 지방의 무역은 거의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으며, 그곳의 조선인 민회 회장은 저에게 만약 지금 출병하지 않으면 조선인은 모두 불령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 절망으로 민심이 흩어져 극도로 악화되니 출병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위와 같이 사면초가인 상황이므로 단호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취할 긴급한 사태임을 감안하여 서둘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1920년 10월 5일 우치다 외무대신 발신 재훈춘 추주(秋洲) 분관 주임 앞 전보 요지
이달 3일발 귀 전보 내용인 재차 군대 출동 요구 건을 추인합니다.

11. 1920년 10월 5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훈춘사변에 비추어 볼 때 본관 및 각 분관 소재지의 기타 거류민 보호 및 경비에 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도 북부로부터 서남부 지대에 횡행하는 마적은 항상 백초구(百草溝) 및 두도구(頭道溝) 지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군대와 싸우다 흩어진 불령선인은 부대를 만들어 왕청(汪淸), 연길(延吉), 화룡(和龍) 각 현 내에 출몰하여 암살단 및 밀정을 보내 각 상부지(商埠地)를 염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들 마적단 및 불령선인단이 상부지로 습격해오면 중국 군경은 곧바로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약탈의 좋은 기회로 삼아 거기에 가담할 것이라고 훈춘사변으로 중국 군경의 내막을 간파한 마적 등은 군경 모두 전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님을 알고 다시 도시로 습격해 올 것이 예상되므로, 이 경우가 되면 우리 경찰관만으로 방어해 거류민을 완전하게 보호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상당한 경비력을 갖추려면 한곳에 적어도 200 내지 300명 이상의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군대식으로 통제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관은 지금의 형세상 이제는 경찰력을 충실히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또 불령선인의 단속에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그 후에도 거류민의 공황 상태가 더욱 심해져 조선은행 및 동척출장소는 제일 먼저 희생당할 것이라는 소문으로 형세 일반이 나빠졌습니다.

(중략)

29. 1920년 10월 10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지난 9일 밤 보병 제73연대본부가 그곳에 도착하였다. 지금까지 도착한 우리 부대(국자가(局子街) 및 두도구를 포함)는 다음과 같다.

보병 2대대, 기병 1중대, 특종포대 2소대, 공병 1소대, 기관총대, 통신대 및 위생대가 있다.

‘주기(註記): 10월 9일에 간도과견 부대는 보병 제73연대본부 및 보병 2대대(그중 국자가 및 두도구에 보병 각 1중대), 기관총 6, 보병포 2, 기병 1중대, 공병 19대대(1중대 결) 전선 가설 중이다.’

30. 1920년 10월 12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이 방면 파견지 대장 야마다(山田) 대좌는 그 주력을 끌고 10월 12일 출발하여 두도구
방면으로 출동하였다.

31. 1920년 10월 12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오늘 아침 백초구(百草溝)에서 인양한 일본인 8명은 같은 날 오후 9시 국자가에 안전
하게 도착하였다. 이타가키(板垣) 주임은 왕청현(汪淸縣) 지사 간담 때문에 14일까지 출
발을 보류하였다. 백초구에 남은 사람은 이타가키 주임과 순사 5명이다.

32. 1920년 10월 12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천보산(天寶山)에 군대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 관으로부터 순사 10명을 파견하게
되었다. 이어서 도윤(道尹)에게 그곳에 군경 파견을 요구한 결과 오늘 아침 약 100명을
이곳으로 급파하였다.

33. 1920년 10월 13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함경북도 지사로부터 갑호의 전보에 따라 을호로 회답하였다.
(갑호) 우리 군대의 간도 출동 시는 본도에서 경찰관을 대동해 출동시키는 것으로 하
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을호) 간도에서의 경찰권은 당 관에 있어 이번에는 단순히 군대만의 출동을 요구한
것입니다. 때문에 경찰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쪽에서 응원을 요청할 것이
므로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 도(道) 경찰관은 출동하지 않도록 양해
해 주기 바랍니다.

34. 1920년 10월 13일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백초구 출장소 이타가키 주임으로부터 이 지방의 마적 상황에 관해 다음과 같은 보고
가 있었다.

대왕청(大王淸) 지방에서 활동하는 마적단은 약 1,000명에 달하는데 계속 백초구를 노
리고 있는데 이곳의 중국병사는 100명도 되지 않아 중국 군경이 공동으로 경계에 임하
고 있으나 경비가 허술하여, 지사는 일본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중국

상인은 귀중품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땅속에 은닉하고 주인은 밤마다 거처를 바꾸고 있다. 조선인은 4, 5일 전부터 문을 잠그고 부녀자는 전부 부근 부락으로 대피시켰다. (중략)

1920년 10월 9일

재간도 총영사대리영사 사카이 요사키치(堺與三吉)

(중략)

37. 1920년 10월 14일 발표, 간도 출병에 관한 제국 정부의 성명

제국 정부는 불령선인의 간도 방면에서의 근래 활동을 보아 일찍이 북경 봉천(奉天) 및 길림(吉林)에서 여러 번 중국 측과 교섭하여 중일 공동 토벌을 실행하려 했으나 중국 측에서는 우리 측의 주장에 응하지 않고 점차 중국 측만으로 토벌대를 조직하여 먼저 와서 토벌 실행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령선인의 활동을 격화시켜 중국 마적 및 과격파 러시아인들과 제휴하여 비적단을 조직해 각지에서 도발하였다. 이에 간도 방면 불령선인의 색채는 일변하여 흉포함이 더욱 심해져 심지어는 최근 훈춘에서 불행한 흥변을 일으켰다. 그 후에도 우리 총영사관 소재지인 용정촌(龍井村)과 분관 소재지인 두도구, 국자가 및 백초구 방면에도 큰 세력을 가진 마적단이 습격한다는 정보가 끊이질 않을 뿐 아니라 다수의 불령선인단 역시 언제 습격해 올지 모르는 험악한 형세가 되었다. 간도 방면 일대의 형세가 이와 같으므로, 우리 자위상 영사관 및 거류민 보호, 경비를 위해 전부터 임시로 파견했던 소수의 영사관 경찰대 및 앞의 훈춘흥변 때문에 파견된 군대와 용정촌 방면의 위급상황 때문에 임시 파견된 소규모의 군대로는 도저히 이 위험한 형세에 대응할 수 없다. 이에 제국 정부는 차제에 간도 방면의 자위에 필요한 경비를 갖추어 아울러 불령선인 및 비도 습격의 화근을 일소하여 우리 접경지대에 대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군대를 더 많이 파견하여 이 불안한 형세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우선 용정촌, 두도구, 국자가 및 백초구 등의 제국 영사관 및 재류 제국 신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경비를 위해 필요한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정부에게 위의 군대 파견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여 양해를 구한바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우리의 출병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는 뜻을 이달 9일 우리 오바타(小幡) 공사에게 언명하였다. 제국 정부는 전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착착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12일 중국 정부는 11일자 공문을 오바타 공사에게 교부하여 갑자기 말을 뒤집어 우리 측의 증명을 거절해 왔다. 제국 정부가 이웃나라의

우의를 고려하여 미리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정신으로 일을 처리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결국 이에 응하지 않음은 제국 정부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도 지방 일대의 형세는 한시가 위급하므로 이곳 영사관 및 재류 제국 신민 보호, 경비를 위해 제국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는 이 때문에 중지할 수 없으며 자위상 부득이한 수단을 결행할 것이라는 뜻을 중국 정부에 통고하였다. 이와 같이 제국 정부는 보호·경비를 위해 필요한 병력을 이 방면에 증파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화근을 근절하고 중일 양국 접경지대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차제에 일본과 중국 공동으로 비적 소탕에 종사하려 한다. 그리고 본 건의 출병은 원래 간도 방면에서 위급한 형세에 응하려는 일시적 조치로, 이 방면에서 불령선인 및 비도에 관한 우려가 없는 평온한 상태가 되면 바로 철병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38. 1920년 10월 10일 재훈춘 추주 분관 주임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사타니(佐谷) 경부는 9월 12일 마적이 습격해 온 후 침식을 잊으며 경계에 종사하여 경찰서원을 잘 지휘하고 있었으나 10월 2일 마적 습격 시 격투 중 적탄을 맞아 다리에 관통상을 입으면서도 전투를 계속하다가 인후부까지 총상을 입어 마침내 일어날 수 없음을 알고 경찰서장의 의자에서 의연히 사망하였다. 그 비장한 최후는 지극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시부타니(渋谷) 경부(함경도에서 파견되어 정보 수집에 종사 중)도 9월 12일 이래 거류민 재향군인으로 조직된 의용대를 지휘하여 2일 마적 습격 시 처자를 피난시키던 도중 총탄을 맞아 쓰러졌다. 또한 순사는 당시 열심히 맞서 싸우다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니시나(西奈) 기사(技師)를 도와 현관문의 문장(紋章)을 떼는 등 분투하다 마침내 적탄을 맞았다.

39. 1920년 10월 14일 재훈춘 추주 분관 주임 발신 우치다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육군 소장 이소바야시 마사아키(磯林正明)가 이끄는 보병대 38여단 사령부 및 보병 1대대는 10월 12일 훈춘을 습격해 왔다.

14일부터 구도구(九道溝), 대황구(大荒溝) 및 훈춘 부근의 토벌을 개시할 터이어서 함경북도에서 이 현에 와 있던 경부 고마츠 히로미(小松寛美)가 이끄는 순사 55명은 그 3분의 1을 남기고 간도로 이동하라는 명을 받고 오늘 출발할 것이다.

〈출전 : 間島琿春地方ニ於ケル外務省警察ノ沿革(第三) - 琿春事變及間島出兵, 1920~1921년, 『外務省警察史』 21, 不二出版, 1998년, 16~26쪽〉

3) 간도 신시설에 관한 건

(상략)

5. 1918년 4월 26일부 재간도 스즈키(鈴木) 총영사 대리 발신 고토(後藤) 외무대신 앞 품청(稟請) 요지

간도 신시설에 관한 건

간도 신시설 건에 관해 4월 4일자로 정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훈시가 있었으므로 깊이 숙고한 뒤 국자가 및 두도구의 각 분관 주임과도 협의를 거쳐 별지와 같이 품신합니다.

본 건은 이 지역의 경영상 중대한 안건일 뿐 아니라 본 건 실시와 함께 중국 관헌이 여러 가지 외교상의 문제를 제기해 올 것이 분명하고 또 한편 조선총독부와 여러 관계가 있어 매우 착종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의 실시 방법에 관해 친히 훈령을 받는 동시에 간도 법권 문제 발생 이래 이 지방의 상황에 관해 상세한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조선에 돌아가시면 가시는 길에 조선총독부의 관계 각 부도 이에 대해 상세한 협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 경찰 분서 설치 건

1) 설치 지점

설치 지점은 각 분관 주임과 상세하게 협의한 결과 별지 도면과 같이 결정했다. 즉 훈춘 것까지 합쳐 총 18개 소로 하여 본 성(省)에서 예정한 것보다 2개 소가 많으나 예산에 기재된 경찰관 비용은 모두 일본인에 대한 비용이므로 약 반수를 조선인으로 채용한다면 인원수를 20명 더 증원할 수 있으니 설치 지점을 늘려도 별 차질이 없을 듯하다.

훈시에 따르면 본 시설은 편의상 훈춘을 포함하고 있는바 원래 본 건은 조선인의 보호 단속을 위해서이나 그 진의는 간도 법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이고 간도 문제가 해결되면 훈춘 지방의 문제는 이와 함께 연동하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해결될 성질의 것이다. 간도에 가장 먼저 설치하고 훈춘은 그 다음으로 실시하는 방침이 좋다고 생각한다.

2) 설치 방법 및 시기

한꺼번에 이를 설치할지 아니면 몇 번에 나누어 점차 설치할지는 숙고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로 여러 면에서 고려했으나 가능한 한 한꺼번에 설치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중국 측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몇 번에 나누어 순차적으로 설치하려고 해도 이미 한곳이라도 설치가 되면 바로 중국 측이 알게 되어 제국 정부에 항의를 해 올 것이 분명하므로 이미 항의를 받은 뒤에 계속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항전적인 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설치하는 방침을 취하도록 한다. 이를 설치하기 위해 각 지점에 경찰관을 출동시킴과 동시에 소관으로부터 연길 도윤에게 제국 신민인 조선인 보호 단속을 위해 영사관원을 파견하니 양해를 바란다고 통지하여 정정당당하게 직무 수행을 시작하는 방침을 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사태가 그와 같이 되면 중국 측으로서는 매우 낭패일 것이고 어떤 태도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우나 1907년 통감부 파출소를 용정촌에 두고 각지에 헌병주둔소를 설치했을 때는 중국 측에서 곧바로 대항적 태도로 나왔다. 이에 우리에게 증파된 병사 순경을 각지에 주재시키고 사사건건 대항하게 했다. 지금 중국 관헌의 상황으로는 그러한 대항책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반드시 중국과 친한 조선인을 사주하여 우리의 시정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혹은 일본 정부가 무력으로 간도를 점령하려 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신문지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행동을 안팎으로 비난할 것이 분명하고 나아가 외교상 여러 문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설치와 동시에 소관 및 각 분관 주임으로부터 중국 관민 및 조선인에 대해 경찰관 파견의 취지를 반복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망동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본 건의 실시에 대해 중국 정부가 제국 정부에 번번이 항의를 해 올 것이니 이 기회에 간도 법권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건은 일찍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에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중국인 및 조선인 가운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면 여러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으니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3) 경찰 분서의 명칭 및 복장

그 명칭에 '경찰'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영사관 출장소 또는 영사관 파출소 사무소 등의 명칭이 좋겠다. 신조약에서 경찰권은 중국 관헌에 속해 있으므로 상부지 외의 경찰관은 사법경찰관의 의미가 되므로 크게 불리하고 불편하다. 따라서 사법경찰뿐 아니라 영

사관이 관장하는 일반 보호 단속의 의미를 갖도록 해 두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편 조선인 측에서 관찰하기에는 경찰이라는 글자를 쓰면 단순히 악행이나 비행의 처벌 수사만 관장하는 듯한 어감을 받고, 보호 지도하는 온정을 갖지 않는 듯이 생각하여 시정상 지장이 적지 않으므로 경찰이라는 글자는 피하는 것이 낫다. 복장으로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제복을 입어야 하나 주임경부 1명은 평복을 착용시키도록 했으면 한다. 이는 영사관 파출사무소의 의의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일반 조선인과 중국 관민도 이를 받아들이기가 쉬움은 당 관 백초구파출소의 상황을 보아도 분명하다.

4) 분서 및 파출소에 할당할 가옥 건

분서 혹은 파출소를 설치하기 위해 각 지방 부락에 적당한 가옥을 찾기가 자못 힘들기 때문에 미리 선정해 두려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중국 관헌이 알아채어 아직 파견하기도 전에 그들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미리 이의를 제기해 와 헛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파견 시 급히 조선민의 가옥을 빌려 임시사무소를 두고 사무를 개시한 뒤 충분히 조사한 후에 적당한 가옥을 빌리거나 또는 적당한 것이 없으면 창립비를 써서 신축하는 것도 고려한다. 생각건대 각지 어디에서나 집을 빌리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대부분은 신축이 불가피할 것이나 이곳은 추위가 심하여 10월 하순부터의 공사는 전혀 불가능하니 신축공사는 매우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5) 조선인 경찰관의 채용

이번에 설치할 지방은 모두 지방부락으로 그 주민은 전부 조선인이므로 조선인 경찰관을 채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선인 경찰관을 채용할 것인가에 대해 각 분관 주임 및 당 관 경찰서장 등의 의견을 들으니 조선인 순사는 약 반수 즉 일본인 순사와 대개 같은 수, 경부는 일본인 경부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하니 일반의 의견과 일치하는 바이다.

현재 당 관 재근 총독부 소속 조선인 경찰관의 급여는 별지에 기재된 대로이다. 순사 및 순사보는 외무성 순사와 비교하여 약 3할, 경부는 약 5할 정도의 소액(少額)이기 때문에 이를 표준으로 다소 급여를 증가시켜도 순사 및 순사보를 약 20명 정도 증원할 수 있고 경부도 12명 늘릴 수 있다. 총독부 제도에는 순사 및 순사보로 되어 있으나 외무성에서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순사 및 순사부장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인을 외무성 경찰관에 임용하는 경우 이를 임용령상에서 보면 순사는 바로 임용

할 수 있으나 경부는 일반 판임관의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조선인을 경부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먼저 순사부장으로 임용한 뒤 경부로 임용하면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보면, 순사는 12엔 내지 20엔으로 규정되어 있고 수당은 40엔 이내로 되어 있으니 별도로 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조선인 순사에게는 위 규정의 범위 내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급할 수 있다.

경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선에 있어서의 조선인에 대한 봉급령과 일본인에 대한 봉급령이 전혀 달라 외무성에 경부를 채용하려면 그 받는 금액에 상당하는 봉급으로 낮춰 지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재근봉(在勤俸)은 120엔 이하에서 적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여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6) 간도 재건 총독부 소속 조선인 경찰관의 외무성 경찰관 임용 건

당 간도에 총독부로부터 파견된 조선인 경찰관은 경부 2명, 순사 및 순사보 16명으로 그 반수, 즉 경부 1명 및 순사, 순사보 8명은 총영사관 및 각 분관의 경찰서에 배치되어 경찰서 임무에 종사하고 다른 반수는 간도 파견 총독부 헌병 측에 속하여 헌병장교의 지휘하에 전적으로 탐정업무에 종사한다.

영사관 측 임무에 종사하는 조선인 경찰관은 모두 경찰관서에서 통역 임무를 보고 또 순사 보조를 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다만 관적이 총독부에 속하여 외무성 관리가 아니므로 사용할 때 불편하다. 영사관 경찰서 사무는 꼭 외무성 관리만으로 처리해야만 한다. 각 분관 주임, 당 관 경찰서장 및 각 분관 경찰서장 등이 희망하는 바로는 이번에 이루어지는 경찰관 확장을 계기로 총독부와 협력하여 조선인 순사는 차제에 모두 외무성으로 전적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총독부 일선(日鮮) 경찰관 채용의 건

이번의 증가에 관해 본 성에서는 주로 총독부에서 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한바 총독부 경찰관은 조선인 통치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채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나 총독부에서 성적이 우량한 자는 도저히 인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간도는 간도 사정이 있고 조선과 상황이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총독부 경찰관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외무성에서 채용하는 경찰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일정 수

의 총독부 경찰관을 아울러 채용하는 정도로 해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인 경찰관은 도저히 본 성에서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독부와 교섭하여 채용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 총독부에서 조선인 경찰관 가운데 적당한 지원자가 없어 곤란한 상황이므로 수십 명의 인원을 한꺼번에 인도할지는 매우 의문이다. 하지만 우선 20명 정도를 얻는 것은 당 관에 근무하고 있는 조선인 경찰관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미봉하고 점차 충실을 기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또 이곳에서도 10명 정도는 적당한 자를 얻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조선인 중에는 일본어 외에 중국어에도 정통한 자가 많아 이들 조선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매우 편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도 다소의 채용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기 바란다.

8) 마필(馬匹) 및 총기

간도 지방은 교통이 불편하여 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어 각 관(館)마다 말을 키우고 있다. 이번 확장을 맞이하여 적어도 15마리(당 관 2마리, 국자가, 두도구, 백초구, 훈춘, 각 1마리 및 각 분서에 1마리씩)를 구입하여 배부할 필요가 있다.

총기는 현재 각 관을 합산하여 보병 총 100정, 권총 100정이 있으나 인원의 증가와 함께 더 많은 증가가 필요하여 보병 총 30정, 권총 50정의 구입 배부가 필요하다. 현지에서 말 1마리의 가격은 현재 100엔에서 150엔 정도이고 총기 가격은 모르겠다.

9) 사법사무 담당자 파견 건

간도 지방에서 사법사무 특히 민사사무는 매우 복잡하여 전임 담당원을 두지 않으면 도저히 처리할 수 없으나 이번의 신시설 때문에 사법사무가 크게 격증할 것이므로 민사사무에 정통한 관원을 당 관에 1명, 국자가 및 두도구 분관에 각 1명을 시급히 파견해주시기 바란다.

제2. 기밀비 지출 시설 건

현재 간도에서 총독부 시설은 앞에서 기술한 헌병 및 조선인 경찰관 외에는 주로 교육 및 위생에 관한 것이다. 용정촌에 보통학교를 설치하고 국자가, 두도구 및 백초구에 분교를 두었으며 또 주요 부락에 서당 21개를 두어 조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위생

에 관해서는 용정촌에 간도 자혜의원(慈惠醫院)을 두고 그 외 두도구 및 백초구에 축탁 의사를 두었다. 또 국자가 및 훈춘에서는 이 곳 개업의에 의뢰하여 조선인에게 진료를 하는 한편 주요 부락을 순회하며 진료하게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 및 위생에 관해 동부(府)에서 지출하는 경비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18년도 지출경상비

간도자혜병원비	19,570엔
간도보통학교비	24,075엔
서당비	3,588엔
조선인 시료(施療)비	3,000엔
합계	50,233엔

야박하게 보아도 교육 및 위생에 관해서는 이미 총독부에서 적지 않은 경비를 지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감독 기타 면에서 동 부가 경영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므로 위의 교육 및 위생 두 사항에 한해서는 모두 동 부에서 경영하여 더욱 확장시키도록 한다. 동시에 다른 모든 사업은 모두 외무성에서 경영할 방침을 확정하고 차제에 총독부와 협의를 해 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우선 외무성에서 경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인 거류민회의 보조

조선인 거류민회가 설립된 곳은 현재 용정촌, 두도구 및 훈춘으로 설립 비용은 외무성에서 지출했으나 경상비에 관해서는 총독부에서 용정촌에 대해 매월 50엔, 두도구 및 훈춘에 대해 각 30원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거류민회의 사업은 일반 행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영사관 시정의 보조기관 성질을 가지므로 이의 보조는 모두 외무성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총독부에서 지출하는 보조금은 이를 교육 및 위생 방면에 쓰도록 동부에 교섭할 필요가 있다.

2) 수의(獸醫) 신설

간도 농민의 축우는 주요 자산으로, 경운작업을 모두 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소의 질병이 자주 유행하여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으므로 당 관에 1명의 수의를 배치하여 항상

방역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리고 당 관 순사 중 수의학교를 졸업한 자가 1명 있으니 이를 보조원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방역에 필요한 혈청은 총독부와 교섭하여 받거나 저가로 살 필요가 있다. 수의학의 수당은 한 달에 100엔 여비는 평균 30엔 정도로 교섭해야 할 것이다. 인선은 농상무성 또는 총독부 경무총감부에 의뢰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첩보기관의 신설

전부터 총독부에서는 첩보를 중시하여 파견 헌병장교들로 하여금 다수의 일본인, 조선인을 고용하여 탐정의 임무를 보게 하고 있으나 영사관 측에서는 경비 부족, 인원 부족으로 충분히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확장을 기회로 당 관 및 각 분관에 상설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 즉 국자가 분관에서는 주로 중국 측에 관한 정찰을 위해 두도구 분관에는 동 지방 일대의 조선인 및 중국인의 상황을 알게 함과 동시에 멀리 안도(安圖), 무송현(撫松縣) 지방까지도 정찰시키고 또 훈춘 분관 및 백초구 출장소에는 북부 일대지방으로부터 멀리 삼분전(三盆田) 영고탑(寧古塔) 주변까지 관할하게 하여 당 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시(警視)에게 이를 총괄시킨다. 또한 당 관 경찰관에 주무부(主務部)를 두어 매일 조선인의 주요인물 및 중국 관련 가운데 친일자 등을 조종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비용으로는 매월 당 관 60엔, 각 분관 및 백초구 출장소 평균 35엔, 합계 1개월에 200엔이 필요하다.

4) 국자가에 일어학회를 둘 것

국자가에 있는 중국인 자제로서 최근 일본어를 배우려는 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지 보통학교 직원에게 교편을 잡게 할 방침으로 적당한 가옥을 빌려 야간에 중국인 자제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도록 한다. 이는 일본 세력을 키우는 데 효과가 적지 않으며 경비는 1개월에 약 50엔으로 충분할 것이다.

5) 사장과 부사장(部社長)의 임명 및 보조

통감부 시대에 간도를 50사(社)로 구획하고, 1회사에 사장 1명을 임명하여 사장 위에 부사장 4명을 두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번의 시설을 기회로 위의 제도를 다시 실시, 사장과 도사장(都社長)을 임명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급하고 영사관 통치의 보조기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각 상부지에서는

조선인 거류민회를 시정 보조기관으로 하고 각 지방 부락에서는 도사장 및 사장을 보조 기관으로 하여 점차 조선인 일반을 이에 흡수할 방침이다. 도사장 또는 사장의 인물 선정에는 최대한 노력하여 명망과 세력을 갖고 사내(社內)의 인민을 통제할 수 있는 자로 하여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경비는 도사장에게는 한 달에 10엔 내지 15엔, 사장에게는 8엔 내지 10엔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그리고 50사를 한꺼번에 임명하지 말고 우선 12, 13사를 임명하고 점차 확장하는 방침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6) 지방 부락에서의 우편 건

현재 일본 우편은 상부지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어 지방 부락에는 중국 우편도 가지 않아 지방 조선인은 각 상부지로 가서 우편을 발송, 수령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번에 각 부락에 분서 혹은 파출소를 둔 이상 공문의 왕복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장하여 각 분서 혹은 파출소에 우편함을 두어 일반 조선인의 편지를 취급하여 가장 가까운 상부지 우편국으로 송부하고 또 상부지 우편국에서 분서파출소로 송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리고 위의 사무를 일본우편국에서 하게 될 경우 혹시 중국 측에서 이익을 제기할지 모르므로 여러 관계상 상부지 조선인 거류민회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적당하다. 각 상부지를 합산하여 한 달에 약 110엔(용정촌 35엔, 국자가 25엔, 두도구 20엔, 훈춘 20엔, 백초구 10엔)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상당부분 정착한 후에 완전한 일본 우편제도를 실시하기 바란다.

7) 간도시보(間島時報)의 보조

간도시보는 당 관의 보호하에 1주에 2회 발행하는데 한 면은 일본문, 한 면은 조선문으로 되어 있어 조선인 계발을 위해 효과가 적지 않다. 조선총독부에서도 매월 25엔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물가가 급등하여 경영이 곤란한 상태이므로 조선문으로 된 부분을 개량하여 지방 각 부락의 주요 조선인에게 기증하여 널리 구독시킬 방법을 취하면 조선인 통치상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니 한 달에 약 100엔을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재간도 총독부 조선인 경찰관 인원표

금 35엔(4급봉)	경부 2명(그 외 월액 여비 1명 당 20엔)
금 17엔	순사 1명(그 외 월액 여비 1명 당 15엔)
금 15엔	순사보 3명(동상(同上))
금 14엔	동(同) 4명(동상)
금 13엔	동 1명(동상)
금 12엔	동 2명(동상)
금 11엔	동 4명(동상)
금 10엔	동 1명(동상)
계	경부 2명, 순사 순사보 16명

[2] 조선인 경찰관의 배치

배치소	경부	순사	순사보	계
총영사관	2	1	6	9
국자가 분관			3	3
두도구 분관			2	2
훈춘 분관			2	2
백초구 파출소			2	2
계	2	2	15	18

* 위의 내용 중 경부 1명, 순사보 3명은 총영사관 사무에 종사하고 순사보 2명은 국자가 분관 사무에 종사하고 순사보 1명씩은 두도구 분관, 훈춘 분관 및 백초구 출장소의 사무에 종사한다. 즉 9명은 영사관 측의 사무, 다른 9명은 총독부 헌병 측의 사무에 종사한다.

1917년도 간도 조선인 경찰관 예산

경찰비	7,745엔
내역	
청비	380엔
순사 봉급	2,328엔(경부 봉급은 경무총감부로부터 본인에게 직송)
여비	4,500엔(월액 여비를 포함함)
급여	36엔(통역수당)
고인(雇人)료	314엔
피복 및 대구비	40엔(순사, 순사보 피복은 현품 급여)
잡비	82엔(선물비, 잡비)
유치인비	65엔(수인 압송)

간도 조선인 경찰관 여비

제71조 간도 파견의 조선인 경찰관서 직원에게는 주재지 체재 중 제8호 표의 간도 월액(月額) 여비를 지급한다.

간도 이외의 곳에 출장한 경우라도 주재지로부터 편도 4리 미만인 경우는 전항 월액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72조 전 조(前條)의 직원이 편도 4리 이상인 곳으로 출장한 경우에는 제9호 표의 간도관내 여비를 지급한다.

전 조의 출장으로 차마(車馬)가 필요한 경우는 소속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 실비를 지급한다.

제73조 간도 월액 여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새로 간도에 온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2. 간도를 떠날 때는 그 전날까지 날짜를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3. 퇴관, 퇴직, 면관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당일까지 날짜를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4. 주재지로부터 편도 4리 이상인 곳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출발 전 일까지 또는 귀착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5. 휴가, 병, 기타 고장으로 결근이 계속되어 10일이 넘을 경우에는 그 이후는 결근 일수에 대해서는 월액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간도 월액 여비

제8호 표

주임관	월액 40엔
판임관	동(同) 20엔
순사	동 15엔

간도 관내 여비

제9호 표

등급	갑액(숙박한 날)	을액(숙박한 날)
주임관	3엔 50전	2엔 50전
판임관	2엔	1엔 50전
순사	1엔 20전	90전

- 별지 도면 생략 -

6. 1918년 5월 15일자 재간도 스키 총영사 대리발 고토 외무대신 앞 전보 요지

소관이 일본에 가는 길에 조선에서 조선총독부에 들러 대강의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뒤 본 성의 결정을 얻어 귀임하여 다시 총독부와 확정적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증원할 경찰관에 관해 본 성에서는 대개 어느 정도의 인원을 총독부 측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방침인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7. 1918년 5월 18일 고토 외무대신 발신 재간도 스키 총영사 대리 앞 전보 요지

귀 관이 귀국 도중 조선총독부를 방문할 때는 단지 귀 관만 참고적으로 동 부(府)의 의향을 듣고 본 성에서 협의를 거친 뒤에 동 부와 협의하기 바랍니다.

8. 1918년 6월 17일자 성의(省議)

(1918년 4월 26일자 재간도 스키 총영사 대리 품청에 대한)

간도 신시설에 관한 건

제1. 경찰 분서 설치 건

1) 설치 지점

설치 지점은 다음 18개 소가 적당하다고 본다. 단 최초의 예정보다 두 곳이 더 많으나 예산에 계상한 비용은 모두 일본인에 대한 비용이며 약 반수를 조선인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인원도 20명 정도 더 증원할 수 있으므로 설치 지점을 늘려도 상관없다고 본다.

(1) 간도 총영사관 소속

- 대립자(大拉子)
- 하천평(下泉坪)
- 천보산(天寶山)
- 남양평(南洋坪)
- 서작동(西作洞)
- 사기동(砂器洞)
- 부동(釜洞)

(2) 국자가 분관 소속

- 동불사(銅佛寺)
- 걸만동(傑滿洞)
- 일량구(一兩溝)
- 팔도구(八道溝)
- 춘화사석현(春華社石峴)

(3) 두도구 분관 소속

- 삼도구(三道溝) 청파호(靑波湖)
- 이도구(二道溝) 하촌(下村)
- 사도구(四道溝) 귀암촌(貴岩村)

(4) 훈춘 분관 소속

◦ 흑정자(黑頂子)

황구(黃溝)

(5) 백초구 출장소 소속

대감자(大坎子)

(‘◦’을 붙인 곳은 경부를 주임으로 하고 붙이지 않은 곳은 순사부장을 주임으로 한다)

2) 설치방법 및 시기

(본 항은 별도로 결정할 것이므로 생략함)

한꺼번에 이를 설치할지 몇 회로 나누어 점차적으로 설치할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1) 가령 한곳이라도 설치하면 바로 중국 측에 알려져 제국 정부에 항의를 표할 것이고 이미 항의가 있는 뒤에 계속 설치하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너무나 도전적 태도가 될 우려가 있다. (2) 이를 몇 번에 나누어 설치할 때에는 분쟁의 원인을 훗날로 미루게 되어, 간도 지방에서는 결국 일본과 중국 간의 분쟁이 끊일 날이 없게 되어 일선인의 발전에 지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한꺼번에 결행하여 장래에 화근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취하여 가령 1년에 4곳을 둔다 해도 예정 설치 수를 완결하는 데 4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다. 이래서는 시기를 잃을 염려가 있고 도저히 지금 계획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만약 외교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에 기재한 경부를 주임으로 하는 예정지 7곳에 대해 먼저 결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기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각 지점에 경찰관을 출동시킴과 동시에 간도 영사로 하여금 연길 도윤에게 본 건 설치 취지를 통고하고 정정당당하게 직무 집행을 개시하는 방침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실력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지만 반드시 여러 방면으로 방해할 시도할 것이다. 유연비어를 유포하거나 신문지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행동을 내외에 비난할 것이 분명하며 나아가 외교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설치와 동시에 간도 영사 및 각 분관 주임은 중국 관민 및 조선인에 대해 경찰관 파견의 취지를 반복 설명하여 그들이 망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또 본 건은 이미 중국 관헌이 예산 발표 사본 때문에 다소 눈치를 채고 있으므로

시일을 연기하면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겨울로 접어들어 제반 준비가 매우 힘든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속히 결행할 필요가 있다.

3) 경찰 분서의 명칭 및 복장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영사관 출장소(경부를 주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영사관 파출소(순사부장을 주임으로 하는 경우)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복장은 일시적으로 사복으로 하고 점차 제복으로 바꾼다. 단 주임경부 한 명만 계속 평복을 착용시킨다.

4) 분서 및 파출소로 충당할 가옥 건

분서 혹은 파출소로 쓸 가옥은 일시적으로 조선인의 가옥을 빌려 임시사무소로 두고 사무를 개시한 뒤 적당한 가옥을 차입하든가 또는 적당한 것이 없으면 창립비로 민가를 사들여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조선인 경찰관의 채용

지방 부락 주민은 전부 조선인이므로 조선인 경찰관을 채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직무를 실행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비율은 순사는 일본인과 같은 수, 경부는 일본인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조선인 경부는 주임으로 쓰지 말고 총독부 영사관 및 각 분관에 배치하여 경부의 보조 및 통역에 종사시킨다.

조선인 채용은 순사만으로 하고 경부는 모두 일본인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 않으나 조선인을 상당한 지위에 두는 것은 조선인 통치상 매우 필요할 뿐 아니라 종래 이미 경부 및 경시까지도 둔 전례가 있어 이를 폐지하는 방책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주임이 되지 못할 경우는 폐해가 생길 것이다.

조선인 경찰관에 대한 급여는 일본인에 비해 약 반액이 적당할 것이다.

6) 간도 재군 총독부 소속 조선인 경찰관을 외무성 경찰관으로 임용하는 건

총독부 소속 조선인 경찰관으로 현재 간도 총영사관 각 분관에 배치되어 있는 자는 차제에 모두 외무성에서 임용함이 적당하다. 이는 경무의 통일을 기하는 데 필요하며 총

독부에서도 이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7) 총독부 일선 경찰관 채용 건

총독부 경찰관은 조선인 통치에 경험이 있어 이를 채용하여야 함이 당연하나 간도에는 간도의 사정이 있어 조선과는 사정이 크게 다르므로 외무성에서 채용하는 경찰관과 적절히 병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조선인 경찰관은 도저히 본 성에서 채용할 길이 없으니 대개 총독부가 채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일부는 간도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전망이 있으니 10명 정도는 여기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

8) 마필 및 총기

말 45두를 구입하여 각 관 및 출장소에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 간도에서의 가격은 현재 1마리 당 100엔에서 150엔 정도이다.

인원이 증가하면서 총기도 늘릴 필요가 있다. 권총 50정, 보병총 30정을 구입하여야 한다. 단 보병총은 당분간 구입을 연기해도 지장이 없다.

9) 사법사무 담당원 파견 건

조선인에 관한 사법사무 중 특히 민사사무는 건수가 매우 많아 그 사무에 정통한 자 3명을 경부로 채용하여 간도 총영사관 및 국자가, 두도구 각 분관에 배속한다. 단 위는 총독부 법원서기 중에서 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10) 경찰관 증원문제에 대한 총독부 측의 희망에 관한 건

총독부 측의 희망조건으로 스투키 영사에게 요구가 있었다. (1) 현재 간도 재근의 조선총독부 경시를 외무성 경시로 겸임시킬 것, (2) 경부 이상의 경찰관은 모두 총독부 경찰관을 겸임시킬 것, (3) 장래 보충이 필요할 때에는 가능한 한 총독부 측에서 채용한다는 세 가지였다. 경시는 본 성에서 별도로 전임자를 두기 때문에 위의 경시 겸임은 별 지장이 없고 또 경부 이상의 경찰관에 대해 모두 총독부 경찰관을 겸임시키는 것도 본 관을 본 성 관리로 하는 이상은 명령 감독 면에서 하등의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장래 보충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총독부로부터 채용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찰관 배치표

간도 총영사관 증가인원	경 1	순사 8
국자가 분관 증가인원	경 1	순사 5
두도구 분관 증가인원	경 1	순사 4
훈춘 분관 증가인원	경 1	순사 4
백초구 출장소 증가인원		순사 2
대감자(木坎子)	경 1	부장 1, 순사 5
하천평(下泉坪)		동상(同上)
천보산(天寶山)		동상
동불사(銅佛寺)		동상
결만동(傑滿洞)		동상

〈출전 : 間島新施設ニ關スル件 - 警察分署設置ニ關スル件, 1918년, 『外務省警察史』 19, 不二出版, 1998년, 182~192쪽〉

4) 간도 경찰관 증파에 관한 건

1918년 7월 4일자 시데하라(幣原) 외무차관 발신 야마가타(山県)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앞 조회요지

간도 경찰관 증파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스즈키 영사로 하여금 협의를 하게 한바 이번 대요는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으므로 귀 부측으로부터 채용할 인원에 관해서는 책임자를 선정하시어 각 이력서를 모아 관직과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1. 증파 경찰관은 귀 부 및 당 성의 경찰관을 적절히 병용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채용할 것.

- (1) 경부 12명 중 일본인 경부 4명을 당 성에서 채용하고 5명을 귀 부에서 채용한다. 단 그중 3명은 귀 부의 법원 서기 중에서 채용할 것.
- (2) 순사 120명 중 일본인 순사는 60명으로 하고 그중 20명을 당 성에서 채용하고 40명을 귀 부에서 채용할 것.
조선인 순사 60명 중 10명은 간도 총영사관에서 현지 채용하고 50명을 귀 부에서 채용할 것.
2. 귀 부 소속 조선인 경찰관으로 현재 간도에 배속되어 총영사관 각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번에 모두 당 성 총독관으로 임용할 것. 단 그 수는 제1항 중에 포함시킬 것.
3. 스키 영사에게 내시한 내용: (1) 현재 간도 재근 귀 부 경시를 당 성 경시로 겸임시키는 건, (2) 경부 이상 경찰관은 모두 귀 부 경찰관으로 겸임시키는 건, (3) 장래 보충을 요하는 경우 가능한 한 귀 부에서 채용하는 건은 모두 이의가 없게 할 것.

〈출전 : 間島警察官増派二關スル件, 1918년 7월 4일,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1, 고려서림, 2001년, 772~774쪽〉

5) 조선인 순사 채용에 관한 건

1921년 5월 20일자 재간도 사카이 총영사 대리발신 우치다(内田) 외무대신 앞 품청 요지

조선인 순사 채용에 관한 건

조선인 순사 증원 보충을 위해 4월 30일 당 관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한바 수험자 111명 중 황봉춘(黃逢春) 이하 24명을 합격시켜, 그중에 신원이 확실한 자에 대해 5월 19일자로 순사에 임용하여 월급 각 30원을 지급하고 두서(頭書)대로 배치시켰으니 추인한 뒤 사령(辭令)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순사지원서 시험성적표 및 체격검사서를 첨부하여 올립니다.

- 별지 생략 -

신채용 조선인 순사의 배치

총영사관

경찰서	2
남양평(南陽坪) 분서	1
동불사(銅佛寺) 분서	1
천보산(天寶山) 분서	2

국자가 분관

경찰서	4
팔도구(八道溝) 분서	1
의란구(依蘭溝) 분서	2
길구동(傑溝洞) 분서	1
사하하(嗶呀河) 분서	1
양수천자(凉水泉子) 분서	2

두도구 분관

경찰서	1
이도구(二道溝) 분서	1
부동(釜洞) 분서	1

훈춘 분관

흑정자(黑頂子) 분서	2
두도구 분서	2

합계 24명

〈출전 : 朝鮮人巡査採用二關スル件, 1921년 5월 20일, 『外務省警察史』 21,
不二出版, 1998년, 192~193쪽〉

6) 1931년 재길림 총영사관 경찰사무 상황

[6-1]

(상략)

3. 만주사변 전의 치안 상황

길림 지방의 국민부계(國民府系) 불령선인 등은 한때 공산당원의 세력에 압도되어 부진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1930년 8월 이래 중국 관헌의 공산당에 대한 단속이 엄중해진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 측에 영합하여 그 꼬나풀이 되어 공산당 토벌을 빙자하여 세력 만회를 도모하고자 점차 길림성성(吉林省城)에 집합하여 중국 관헌의 양해를 구하려고 여러 책동을 획책하고 있다. 작년 4월 16일 조선인 민회 사무 대표 김정원(金正元)이 중국 관헌에 고용된 불령선인 등의 고문격인 오인화(吳仁華)를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불령선인들은 오인화의 피살을 일본영사관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선전하여 중국 관헌 측의 환심을 샀다. 이어 만보산사건에서 발단하여 조선에서 조선인에 의한 화교배격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측의 악선전과 장춘(長春) 일본 영사의 사주 때문에 중국 측에게 불리한 허위 보도를 했다고 극력 비난하며 장춘에 거주하는 조선일보 지국장 김이삼(金利三)을 길림으로 유치하여 감금, 구타, 협박을 하고 변명서를 쓰게 한 뒤 사실이 폭로될 것을 우려하여 그를 사살했다. 범인인 김일산(金一山)은 당시 중국 공안국원에게 체포되었다가 바로 석방되었다.

이와 같이 그들 불령선인 등은 중국 관헌의 비호를 받아 이를 배경으로 더욱 횡행 발호하고 있다.

한편 중국 측에서는 만보산사건 및 조선 내 화교배격 사건 이래 배일 행동이 급격히 노골화되어 통신, 보도, 기관지는 일제히 대대적으로 날조 기사를 실어 역선전을 꾀하고 학생단체 등이 이에 가담하여 각종의 배일 전단을 살포했다. 특히 성(省) 정부 이하 대관들을 지도위원으로 하는 길림성 당부에서는 과격한 배일 선전문을 인쇄하여 당당히 성당부(省黨府)의 인판(印版)을 압수하여 이를 널리 배포하였다. 또 중앙 당부에서 송부해 온 만보산 및 조선 사건에 관련하여 우리 관민이 조선인을 지도하여 중국인을 참살하는 광경을 그린 각종 포스터 역시 성당부가 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하여 성 안팎 도처의 벽에 붙임으로써 일반 중국인의 적개심을 부추기고 재류 일본인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한편 불령선인 등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불령선인 역시 좋은 기회를 잃지 않으

려고 각종 배일선전 인쇄물을 배포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또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 수령 권수정(權守貞) 일파와 남대관(南大觀) 일파 및 국민부 간부 현익철(玄益哲, 봉천에서 우리 관헌에게 체포됨), 김이대(金履大), 최의산(崔義山) 등은 교묘하게 길림 군벌처 한(韓)처장 왕(王)과장 등과 연결하여 그들의 비호하에 당 지방 재주 친일계를 구축(驅逐)하고자, 무기를 휴대한 부하 다수를 파견하여 협박하고 의무금,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금품과 곡식을 강요하여 머지않아 일본과 중국이 개전하면 중국을 원조하여 일본제국주의 무리를 박멸하겠다는 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길림의 내선인 주민 등은 중국 측의 과격한 배일선전 및 불령선인의 발호에 위협을 받아 분개하고 있던 중, 9월 18일 봉천 부근에서 중국 군병이 만철 선로를 파괴하는 데 기인하여 우리 수비군의 군사행동이 봉천과 장춘에서 개시되었다는 전보가 19일 새벽에 도착하였다. 당 총영사관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예상하여 바로 거류민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방침을 확립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 경찰서원은 각각 경계 태세에 들어가고 재향군인회 및 자경단원과 연락하며 재주 일본인(조선인 포함)의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봉천, 장춘에서의 일본군과 중국군 총들의 진상이 일반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 전해지자 점차 동요되기 시작하였다. 19일 밤은 위험지역에 있는 일본인은 임의로 총영사관으로 철수시켰지만 20일이 되어 중국 시민의 인심이 악화되어 시가지에 불온한 기운이 커지자 총영사관은 거류민, 부녀자의 피난을 자유롭게 허가했으나,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혼란을 예상하여 피난하는 자가 다수 있었다. 21일 아침부터 길림과 장춘 간의 통신 및 교통이 두절되었다고 길림역에서 통지를 해 왔다. 이에 잔류 일본인(조선인 포함)이 전부 총영사관으로 피신하여 모두 불안감에 떨고 있던 차 같은 날 오후 1시 15분 우리 비행기 한 대가 길림의 상공에 나타나 전단을 투하하여 우리 군이 길림을 향해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에 일본인(조선인 포함) 일동은 겨우 안도하였고 같은 날 다문(多門) 사단장이 이끄는 제2사단 주력부대는 특별히 편성한 60량 열차로 길림으로 가서 사단사령부를 상부지의 나고야 여관에 설치하고 군사행동을 개시하기에 이르렀다.

4. 만주사변 후의 치안 상황

황군이 도착하기 이전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당부가 주체가 되어 빈번하게 항일 운동을 계속하고 길림에 주둔하는 중국군도 때때로 연습이라는 구실로 시위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군이 장춘에서 대기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고 관변은 갑자기 무저

항주의를 내걸고 길림의 중국군대를 일본군이 도착하기 전에 전부 지방 부락으로 이동시켰다. 그 때문에 우리 군은 평온하게 중국 병영과 주요한 중국 측 기관을 점령하고 무기 접수에 착수할 수 있었다. 당 총영사관 경찰서에서는 황군의 출동 기회를 이용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인력 부족을 틈타 중국 관현의 비호하에 도시 안에서 도발하며 재주 조선인을 박해하던 불령선인 일당을 쫓기 위해 군부와 연락을 취하여 신속한 행동을 개시했으나 그들은 재빨리 자취를 감춘 뒤였다. 주요 인물은 모두 틈을 보아 각 지방으로 도망하였으므로 평소 연락자 20여 명을 체포하였으나 도망한 불령선인 등은 둔화(敦化), 액목(額穆), 오상(五常) 지방으로 집합하여 형세를 관망 중이다.

5. 도망병의 망동(妄動)에 의한 피난 조선인의 상황 및 구제

(1) 피난민의 정황

일본군 출동 전에 길림주둔 군대의 병사 수는 6,000이라 했으나 그 실제 수는 약 4,000 정도였던 듯하다. 그들 군병은 일본군 도착에 앞서 당시 희(熙) 참모장의 계획에 따라 전부 무장한 채 지방 부락으로 피해 있었으나 그 후 성 정부가 일본군의 요구로 무장해제에 착수하자 희(熙) 장관의 명에 따르지 않고 차제에 먼 곳으로 후퇴하여 형세를 관망하는 모습이였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중국, 조선의 민가를 습격하여 가구, 금곡(金穀)의 약탈을 자행하고 가는 곳마다 조선 농민에게 방화, 참살, 강간 등의 잔학행위를 서슴지 않게 되어 이들 지방에서 조선 농민들은 산이나 들로 피신하였다. 10월 3일 길돈선(吉敦線) 강밀봉(江密峰) 오지의 이도구, 삼도구, 횡도하자(橫道河子) 지방의 조선인 농부(남녀노소) 72명이 길림으로 피난해 온 것을 시작으로 속속 각지에서 피난해 왔다. 피해 지방은 길림현 내의 강동 지방의 이도구 삼도구, 대차책(大茶柵), 석랍자(石礮子), 위당구(葦塘溝), 대둔(大屯), 기반가(基盤街), 대고산(大靠山)—길돈선 강밀봉 오지의 일대— 및 강서 지방 즉 화전현(樺甸縣) 관아도로 쪽의 광홍성, 노영반(老營盤), 오리하자(五里河子), 마봉하(螞蜂河), 평하자(平河子)—이상 화전현— 및 서란현(舒蘭縣) 대요책(大窑柵) 및 간창구, 십리만 등으로 이들 피난민은 모두 빈손으로 급히 피난한 사람들이며 기타 지방은 둔화 시내에서 군과 함께 온 피난자 및 액목하(額穆河)로부터 온 피난자가 여러 명 있다.

(2) 피난민의 구제

1931년 10월 3일 이래 피난 조선인에 대해서는 길림 조선인회에서 조선, 중국, 각국인과 교섭하여 방들을 빌려 여러 곳에 이들을 수용하고 식비로는 하루 한 명당 10전 내지 12전으로 잡아 실비를 당 총영사관으로부터 임시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난자는 매일 증가일로에 있어 수용소가 부족하자 총영사관에서는 다나카(田中) 서장, 다케나카(竹中) 경찰보가 극력 이들의 수용을 선처하여 육군 유(劉) 대위와 의논했다. 중국 측에서 육군 공창(工廠)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총영사가 희(熙) 장관과 교섭한 결과, 상부지 육군공창의 제공을 받아 10월 9일 동 건물 내에 집합 수용하였고 10월 3일부터 12월 26일까지의 수용인원의 누계가 1,320명에 달하였다. 한편 당 영사관에서는 각 농촌의 수확 시기는 이미 늦었지만 아직 수확할 여지는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원주지로 귀환시키기로 군부 및 중국 측과 협력하여 질서를 회복한 지방으로 점차 귀환시키기로 적극 알선한 결과, 10월 11일 이후 매일 귀환자가 나와 12월 25일까지 1,032명이 귀환하였다. 매우 위험한 곳으로 우려되는 곳에는 당 관 경찰관 수명 및 군대, 중국 측 공안국원의 공동 호위하에 원래의 거주지로 송환하는 제반 알선을 주선했지만 원격지인 서란현(舒蘭縣) 및 화전현(樺甸縣)의 오지 지방은 도저히 거주하기 불가하므로 300여 명은 그대로 남아 수용소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출전 : 昭和6年在吉林總領事館警察事務狀況, 1931년,

『在吉林總領事館及敦化分館第二(二册ノ内)』, 『外務省警察史』 13, 不二出版 1998년 323~326쪽)

[6-2]

1931년 재길림 총영사관 경찰사무 상황

1. 지방 치안의 개황

당 지방의 치안을 교란하고 재주민을 극도로 피폐시키고 타도 일본을 유일한 목표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구국군이라는 비적, 공산당원 및 민족주의 불령선인이라는 3대 암종(癌腫)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들은 각각 주의 주장이 맞지 않아도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여

종종 서로 제휴하여 행동을 같이하거나 혹은 서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석현(盤石縣) 삼도강(三道崗)에서 일어난 아리키(有木) 순사 순직 사건과 같이 불령선인의 거두 남대관(南大觀) 일파가 병비(兵匪)와 합류한 것 등은 이 사실을 웅변해 준다. 한편 국민정부에서도 재만 일만 현관(顯官) 암살, 관청 폭파 등 만주국 치안 교란을 위한 혁명적 훈련을 거친 불령선인을 이용하려 한다는 정보가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던 차에 이 삼자 공작을 구체화하여 획책하는 자가 있어 앞으로 상당한 경계가 필요할 것이다.

1) 마적 및 병비의 행동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황군의 입성과 함께 탈주한 중앙 인물인 성윤(誠允), 왕지우(王之祐) 등은 성하 □현에서 성 정부를 조직하여 오로지 일본세력의 구축과 잃어버린 영토 회복을 목표로 항일구국의 깃발을 들고 성내 각지의 대장에게 달려가, 구국의용군의 편성, 반란병 및 비적의 조종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이난진(伊蘭鎮) 수사(守使), 이두빈(李杜賓) 강진(江鎮) 수사, 정초(丁超) 등의 거두가 먼저 이에 가담했고, 이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수미(首尾) 양쪽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견지해 왔던 군경 비대는 반기(反旗)를 흔들며 이에 가담하는 자도 적지 않았다. 초목이 무성해지니, 비적단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풍점해(馮占海), 궁장해(宮長海) 비적 등 반길림군의 주력이 근거지인 서란오상현(舒蘭五常縣) 방면에서 송화강을 건너 이동을 개시했다. 이로 인하여 군소 비적의 책동이 이어져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유언비어가 나돌았고, 이때를 틈타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증가할 뿐 아니라 군경을 협박하여 자파 세력에 가입시키기에 이르러 비적의 세력이 점차 커져 갔다. 각 철도 연선 도시 열차의 습격, 철도 파괴, 전선 절단 등의 폭거 역시 강도를 더해 갔다. 당 성내에 있는 오의자선회(五義慈善會) 간부를 통해 성의 관공서와 기타 각 기관과 연락하여 9월 15일(음력 8월 절구)부터 사변 1주년 기념일인 9월 18일에 이르는 사이에 서로 호응하여 성성(省城)을 포위하고 습격하려 하는 등 비적은 한때 지극히 횡포하게 굴었으나 9월 12일 풍(馮), 궁(宮)¹⁾ 연합대 비적단은 황군에 격퇴를 당하여 반수를 잃고 패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해 일만군경의 부단한 경계와 토벌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한 가을을 목전에 두고 겨울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에 따라 만주국의 타협요구를 계기로 아는 인물을 연결하여 귀순을 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각 비적단이 조용하게 대기하면서 단지 관의 형세를 관망하며 다른 비적단의 동정을 살피 태도를 결정하려고 하였다.

1) 풍점해, 궁장해를 말함.

(1) 주된 비적단의 행동지역

비적단은 자위를 위해 늘 이동하지만 거점 행동지역 내를 전전하는 듯하다. 그들의 목적은 물자의 약탈과 치안의 교란에 있으므로 물자가 많이 모이는 지역 혹은 정치 중심지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지금 그들의 행동 흔적을 돌아보면 비적단의 행동지역은 모든 성의 정치문화 중심지인 길림성을 중추로 하여 길장(吉長), 길돈(吉敦), 길해(吉海)의 세 철도 연선 및 송화강 상하류의 오대 지구로 대별할 수 있다.

(가) 길장 연선 방면

화피창(樺皮廠) 부근을 중심으로 활동한 비적단은 점동양(占東洋), 개동양(蓋東洋), 압동(壓東), 구승(九勝), 삼합(三合), 중산호(中山好), 장강(長江), 길순(吉順) 등 약 1,000여 개의 비적단체가 있으나 그들은 황군이 여러 차례 진격함에 따라 안주할 땅이 없음을 깨닫고 명령에 따를 것을 알리고 약탈행위를 중지했다. 구참(九站) 방면을 중심으로 우가감(牛家坎), 환희령(歡喜嶺) 일대를 전전하던 소백룡(小白龍), 영구(榮久), 대룡(大龍) 등 약 400여 명의 비적은 세 번에 걸친 황군의 공격으로 태반을 잃은 뒤 길해선(吉海線) 연통산(煙筒山) 부근에 있는 전신(殿臣) 밑으로 들어갔다.

길장선 하구대(下九臺) 및 영성자(營城子) 부근을 전전하며 일시적으로 귀순의 뜻을 보이고 귀순조건을 타협하던 11월 17일 하구대, 영성자 양 역(兩驛)을 급습한 비적 수괴 삼강호(三江好)는 부하가 약 5,000명이라고 한다. 그들은 길장선 및 부근 각지를 횡행하며 열차의 습격, 철도의 파괴, 부락 습격을 감행해 왔다.

(나) 길돈, 돈도선(敦圖線) 방면

돈도는 하바르령 서부선 및 길돈선 돈화 방면에는 병비 왕덕림(王德林)의 부하 오준자(吳俊子), 오의성(吳義成) 요진산(姚振山), 장봉(張鵬) 등 약 2,000명이 현하 각지를 횡행하고 있고 액목현성(額木縣城) 방면으로는 도기산(刀岐山) 일파 약 500명이 칩거하고 대도회설법사(大刀會薛法師) 부대도 때때로 연선에 출몰하고 있다. 돈화현성을 세 번에 걸쳐 습격한 비적은 주로 이들의 부대이다.

교하(蛟河) 부근에서는 병비 전림(田霖), 진열무(陣烈武), 유한금(劉漢金)—모두 전직 영장(營長)— 및 열만휘(列滿輝)의 비적단 약 1,500명, 원래 교하 농무회(農務會) 회장이었던 이진성(李振聲)이 이끄는 대도회비(大刀會匪) 300명, 반란 공안대원 200여 명이 횡행하며 교하 습격, 철교 파괴 등 열차 사고를 감행했다.

(다) 길해선 방면

길해 연선 연통산을 근거로 하여 인근 현인 쌍양(雙陽), 이통(伊通), 화전현(樺甸縣) 북부 지구에 출몰하고 있는 비적 전신 일파 약 3,000명은 9월 10일 반석현(盤石縣)을 흑석진(黑石鎮)에 주둔하는 영장 송국영(宋國榮)과 제후하여 습격했는데 길해선의 열차 사고는 이 비적 일파 및 반란병의 소행이다.

(라) 송화강 상류 방면

송화강 상류 방면 화전(樺甸) 영길현(永吉縣) 지방에는 병비단 외에 구국군(수령은 도진황(姚振黃)), 장승군(長勝軍), 맹상군(孟嘗軍), 환양전구사해애국서래호태평(還陽全救四海愛國西來好太平) 등 1,500명이 준동하며, 대도회(大刀會) 우법사(于法師)가 이끄는 약 600여 명도 횡행하고 있다.

(마) 송화강 하류 방면

조랍가(烏拉街) 독립 영장 염혜경(閻惠慶)은 애매한 태도를 지속하며 수회에 걸쳐 이 방면에서 횡행하는 비적을 격퇴하고 방비에 전념하고 있던 중, 9월 상순 서란(舒蘭) 영길현 방면에서 활동하는 풍점해궁(馮占海宮) 장해(長海) 비적이 송화강 하류 방면으로 진출하자 그 부하 및 민병 등 800명을 이끌고 풍궁(馮宮) 비적과 합류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한때 그 세력이 6,000이라 일컬어질 정도였다.

(2) 비적의 도시와 열차 습격

비적의 도시 습격은 물자를 약탈하고, 치안을 교란케 함에 있는데 도시 습격을 감행하는 데는 먼저 통신 기관인 전선 전신주의 절단과 응원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 파괴를 상투수단으로 한다. 이번 해에 있었던 주된 도시 습격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2월 26일 왕덕림(王德林) 비적하의 오의성(吳義成) 부대 약 100명이 길돈선 황토하자(黃土河子)를 습격하여 일본인 1명이 즉사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고 우리 군이 이를 격퇴하였다.
- ② 4월 24일 길돈선 추리구역(秋梨構驛), 대도회(大刀會) 비적 20여 명이 돈화현 이도량자(二道梁子)를 습격하여 조선인 28명을 납치하였다.
- ③ 4월 24일 왕덕림 비적하의 오의성이 이끄는 병비 약 500명이 액목현성(額木縣城)을

습격하여 방화와 약탈을 감행하고 이를 점령하였다(4월 27일 우리 군이 출동하여 격퇴하였다).

- ④ 5월 23일 돈도선 대교에 계통이 불분명한 비적 60명이 습격하여 일본인의 피해는 중상 2, 경상 2, 납치 1명이었다. 우리 군경이 이를 격퇴하였다.
- ⑤ 6월 11일 비적 열한금(列漢金)²⁾ 일파 100명이 교하(蛟河)를 습격하여 시가에 방화하고 현 감옥을 파괴하고 죄수 30명을 석방하였다. 손해는 가옥 50호가 소실되고 물품의 약탈을 합하여 50만 원을 내었고 조선인 한명이 즉사하고 1명이 부상하였다.
- ⑥ 6월 15일 왕덕림 비적하의 요진산(姚振山)이 이끄는 약 1,000명의 비적은 돈화현성을 습격하였다. 우리 군경의 협력으로 격퇴하였고 같은 날 이를 전후하여 약 300명의 두 부대가 돈도선 대교(大橋)와 황토요자(黃土腰子)를 습격하였지만 우리 군의 방어로 격퇴당하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 ⑦ 6월 17일 비적 양광(兩廣) 일파 50명은 길돈선 유수하역(柳樹河驛)을 습격하여 역장(만주인)을 납치하였다.
- ⑧ 7월 15일 비적 약 800명이 길돈선 강밀봉역(江密峯驛)을 습격했지만 우리 군이 격퇴하였다.
- ⑨ 7월 30일 약 100명의 비적은 길돈선 액혁목(額赫穆)을 습격했지만 피해는 없었다.
- ⑩ 8월 10일 길돈선 추리구역(秋梨溝驛) 또는 비적 50명의 습격을 받았으나 피해는 없었다.
- ⑪ 8월 23일 약 300명의 비적이 길돈선 남법역(拉法驛)을 습격하여 약탈하였으나 피해 정도를 자세히 알 수가 없다.
- ⑫ 비적 전신(殿臣) 일파 약 1,000명은 8월 26일 쌍양현성(雙陽縣城)을 습격하여 방화 약탈을 자행하였으나 피해 상황을 알 수 없다.
- ⑬ 왕덕림 비적 배하 오의성이 이끄는 약 1,000명이 다시 돈화현성으로 습격해 왔으나 우리 군경과 격전하여 사체 350구를 유기하고 도망하였다.
- ⑭ 9월 9일 비적 약 100명이 길장선 합만자역(哈灣子驛)을 습격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 ⑮ 9월 10일 오의성 비적 3,000명이 다시 액목현성을 점령하였다.
- ⑯ 9월 10일 비적 전신 송국영(宋國榮)의 연합비적 약 3,000명이 반석현성(盤石縣城)을 습격하여 방화 약탈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시가의 대부분과 경찰 분서가 소실하

2) 앞에 나온 유한금(劉漢金)을 말하는 듯.

고 조선인 사망자 88명을 내었다.

- ⑰ 11월 17일 길장선 하구대(下九臺) 및 영성자(營城子) 양 역에 삼강호비(三江好匪) 약 3,000명이 습격해 와 금품을 빼앗았다.

이상 우리 쪽에서 판명한 부분만 서술했으나 그 외의 각지에서 비적의 습격에 의한 피해는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열차 습격은 군용열차 5회, 여객열차 7회이다.

1. 8월 27일 길해선 반석 출발 열차가 맥능자(麥楞子) 역에 도착하자마자 비적 북원(北原)이 이끄는 약 150명의 일단이 습격해 와서 우리 반석(磐石) 분서원(分署員) 전순사 다카자와(高沢) 및 일본인 1명, 만주인 15명을 납치했다.
2. 9월 5일 길장선 구참(九站), 합달만(哈達灣) 양 역 사이에서 대룡(大龍) 비적 500명이 열차를 습격하여 1명이 즉사하고 일본인, 러시아인 각 1명이 부상했으며 금품을 약탈당한 이 사건은 피해가 상당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두 경찰과 우리 군이 격퇴시켰고 피해액은 특기할 만한 것이 없다.

3. 비적의 철도 파괴

올해 비적이 철도를 분리하여 목교를 불태우거나 철교를 파괴한 건수는 판명된 것만 다음과 같다.

길장선 7(길림, 구참(九站) 간에 일어난 건수만 집계)

길돈선 22

길해선 6(길림, 반석(磐石) 간에 일어난 건수만 집계)

4. 전선의 절단

비적은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전선 절단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어 이 피해 건수를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9월 상순 풍공 연합비적이 길림성성의 습격을 기도했을 당시에는 불과 길장선만 남았고 다른 곳은 거의 절단되었다.

5. 비적단의 길림성성 습격기도

서란오상(舒蘭五常) 및 영길(永吉) 북부 지방에 할거하고 있는 풍점해군 장해 등의 연합비적은 9월 15일(음력 8월 15일 중추절)부터 같은 달 18일 만주사변 1주년 기념일까지 길림성성(省城) 습격을 기획하여 각지에 산재한 비적단과 연락하고 있었는데, 9월 초순 동 연합비적의 주력인 조납가(烏拉街) 방면으로부터 송화강을 넘어 도하 이동을 개시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각지의 약소 비적단이 준동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주국 군경이 이에 투입되었으나 비적단은 계속 증가하여 그 행동이 비밀

리에 교통 통신기관의 파괴와 절단을 일삼아 불령배의 성성(省城) 출몰이 심해졌고 많은 유언비어가 유행하여 인심이 극도로 동요하였다. 이에 앞서 동 연합 반길군(反吉軍)은 이미 성성 내에서 서로 연락하여 일거에 성성을 함락시킬 것을 기도하여 성내 유력 단체인 오의자선회 간부와 비밀리에 계속 연락하고 성성 내의 성 관공서를 비롯하여 기타 각 기관과 연락하여 황군의 행동을 염탐했으나 사전에 우리 측이 탐지하게 되어 동 회 간부를 검거하였다. 이러한 신속한 황군의 활동으로 드디어 비적단을 성 안에 들이지 않고 이를 격퇴하였을 뿐 아니라 동 연합비적은 대다수를 잃고 재기불능이 되었다. 그리고 만주 측에서도 9월 9일 계엄령을 내려 야간에는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하고 송화강 도강을 제한하는 등 성 내외의 경비를 엄하게 하게 했다.

6. 비적단의 세력

비적단의 행동 특히 세력은 늘 이합집산하므로 정보가 일관성이 없어 진실을 알기 어렵다. 각 정보를 종합하면 그 세력 등은 별표와 같다.

〈출전 : 昭和6年在吉林總領事館警察事務狀況, 1931년 『在吉林總領事館及敦化分館第二(二册ノ内)』, 『外務省警察史』 13, 不二出版, 1998년, 367~372쪽〉

7) 1931년 만주사변에 의한 재만 영사관 및 재중국 일본인 철수와 그 피해

만주사변의 발발에 따른 구동북군 패잔병, 비적 등의 발호로 인해 만주 일대의 치안이 매우 어지러워져 재류 일본인은 중대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동지선(東支線) 연선 길림 및 봉천 오지지방 및 동부 내몽고 각 지방의 재류 내선인은 대륙 쪽 하얼빈(哈爾濱) 및 만철부속지 등 안전지대로 피난한 자가 1931년 11월 말 약 1만 3,000명에 달했다. 그 후에도 비적의 출몰이 끊이지 않아 드디어 1932년 1월 하순 하얼빈 사건의 발생으로 북만 지방의 피난자가 격증하고 같은 해 3월 말일까지 누계 4만 1,419명에 달해 그 사이 적봉(赤峯), 통화(通化), 농안(農安)의 각지 영사관 또는 영사분관은 폐쇄하여 철수

여부만 남은 상황이다.

1. 영사관 철수상황

(1) 적봉(赤峯)

만주사변 발발 후 민심이 동요하여 사방의 정세가 점차 불온해졌고 마침 우리 군 비행기의 금주(錦州) 폭탄 사건이 발생하였다. 금주는 적봉의 대문에 해당하여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로타(牟田) 영사 사무대리는 우선 10월 15일 관서원의 부녀자 및 거류민 12명 전부를 북평(北平)으로 이주시켰으나, 그 사이 경진(京津) 지방에는 사변 후 봉천에서 패퇴한 왕이철(王以哲) 군대가 이주하여 동요의 징조가 있었다. 경진이 동요하면 적봉은 완전히 퇴로를 차단당할 뿐 아니라 지방 상황도 날로 악화하여 흑수(黑水, 적봉의 동쪽 140리) 방면에서 마적이 출현하고, 군대는 약 11개월의 급료 체불로 불안한 상황인데다 중국 상인은 일본인이 주는 수표를 받지 않아 영사관 경비도 곤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우선 북평까지 이전함이 옳다고 생각하여 외무성에 청훈 허가를 얻어 현 지사 및 상부지 공안국이 연명하여 영사관 및 거류민 재산은 책임을 지고 보호한다는 공문을 내도록 했다. 또한 일본인 가옥에는 무로타(牟田) 사무대리, 현 지사, 상보공안국장 및 보증인(지방 유력자) 4명의 이름으로 봉인(封印)하고 영사관 관품 및 관원의 사유품 목록에는 현지사가 인증하여 중요 서류를 휴대하고 24일과 28일에 북평에 도착하였다.

(2) 치치하얼(齊齊哈爾)

1931년 10월 12일 흑룡강성(黑龍江省) 임시 주석 대리가 된 흑하(黑河) 경비사령 마점산(馬占山)이 같은 달 15일, 16일경 치치하얼로 입성하여 취임하자 흑룡강성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강경해져 조남(洮南)에 있는 장해봉(張海鵬) 군의 북상을 저지하려 하여 전화(戰禍)가 이곳으로 파급되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영사는 만일을 기하여 먼저 어진영(御眞影) 및 기밀서류 등을 세 번에 걸쳐 재장춘 영사관 및 하얼빈 총영사관으로 송부 기탁했다. 사태가 더욱 긴박해지자 16일 밤 관원 일동 및 재류 내선인과 함께 한때 치치하얼로 철수하여 그곳 총영사관에서 집무하다가 20일 치치하얼 방면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려 귀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같은 달 하순 내조양선(來洮昂線) 보호를 위해 태래(泰來), 강교(江橋) 방면으로 출동한 우리 군은 마점산에서 치치하얼 이북으로 철퇴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오히려 전투장비를 가다듬어 대항 반격의 자세를 보였고 부득이 공격하게 되어 이곳이 다시 전장이 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시미즈(清水) 영사 이하 모든 관원은 11월 5일 아침 다시 하얼빈으로 철수하여 우리 군의 입성을 기다려 20일 관원과 함께 치치하얼로 돌아왔다.

(3) 농안(農安)

1932년 3월 부여(扶餘) 현성을 점령한 비적 이해청(李海靑) 군은 점차 남방으로 향하여 공세를 취하고 같은 달 27일 농안 북방 30리 지점으로 쳐들어 왔다. 이에 다지마(田島) 영사관 사무원은 우선 부녀자 8명을 장춘으로 피신시켰다. 이어 이곳은 모두 비적으로 포위되어 관병은 전의가 없어 언제 비적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위험이 임박했으므로 재장춘 다시로(田代) 영사는 28일 재류민을 인양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23명의 경관대를 급파했다. 그러나 황군이 그곳에 급파될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므로 다지마 사무원은 전신(電信)부호, 기밀서류 등을 소각하고 잔류재산 보전 조치를 강구한 뒤 29일 재류 관민을 모아 앞의 장춘 파견의 경관대와 함께 농안을 탈출하여 비적의 포위를 뚫고 30일 무사히 장춘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우리 군은 이해청 군을 토벌하고 4월 2일 당지에 입성했으나 영사 분관은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

(4) 통화(通化)

1932년 4월 24일 통화현성에 병변이 일어나 이곳 일대가 위협에 빠졌으므로 본 성에 서는 26일 통화에 있는 오키쓰(興津) 부영사에게 영사 분관 및 재류민의 즉시 피신을 명하였다. 한편 봉천에서 이를 구출하기 위해 관동청 경찰대 264명이 출동하여 5월 3일에 이르러 비군과의 협정 성립 결과, 분관원 및 재류민 총 350여 명(그중 조선인은 300명)은 8일 드디어 통화를 출발하여 도중에 경찰대와 합류하여 12일 무사히 봉천에 도착하였다.

〈출전 : 昭和6年滿洲事變二因リ在滿領事館及在留邦人ノ引揚竝ニ被害, 1931년~1932년, 『外務省警察史』 8, 不二出版, 1998년, 234~235쪽〉

8) 1932년 재만 영사관 경찰의 활동 상황

만주 영사관 경찰은 주로 만철(滿鐵) 연선에서 떨어진 오지에 산재하여 우리 행정권이 반영되지 않는 관계로 부속지 또는 관동주와 달리 임무 수행상 많은 불리함과 불편이 늘 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몇 년째 증가추세에 있는 중국 측의 배일 풍조 때문에 직무 수행이 더욱 곤란해진 가운데 은일자중하며 거류민 보호와 단속에 중점을 두어 왔다.

마침 만주사변 발발에 따라 반일, 모일(侮日)을 내건 구동북정권이 실추하고 게다가 만주국이 성립하자 우리 경찰관과 지방 군경과의 협조 연락이 잘 이루어져 이전의 곤란이 많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변으로 인한 치안통제의 일시적 붕괴 때문에 병비 및 공비의 횡행이 갑자기 증가하여 거류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상황에 편승한 불량불령 무리들에 대한 단속 등과 관련하여 영사관 경찰의 임무는 더욱 가중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기관의 보충을 꾀하여 비상시국에 대한 선처를 기했으나 만주국 성립 후 국기(國基) 진흥상 국내 치안의 회복 유지를 원조하는 것이 제국의 최대 급무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 영사관 경찰도 관동군을 중심으로 작전을 근간으로 토비사업에 관한 군대와의 공동 동작, 철도 건설에 대한 원호, 조선 농민의 파종 및 수확에 대한 현지 보호 등 각 방면에 걸쳐 고군분투하여 사변 이래 재만 영사관 경찰관직에서 순직한 자가 11명(그중 2명은 응원하러 온 관동청 경찰관), 부상을 입은 자가 15명으로, 장기간에 걸친 눈부신 활동과 현저한 공적은 외무성 경찰사상 유례 없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 상황은 각 영사관 부분에서 상술하였다.

〈출전 : 昭和7年在滿領事館警察ノ活動狀況, 1932년, 『外務省警察史』 8, 不二出版 1998년, 238쪽〉

9) 1932년 중 간도(훈춘현 포함) 및 접경지방 중요 치안사항 월별표

- 1월

왕덕림(王德林) 부대의 반란 정황

작년 12월 돈도선(敦圖線) 측량대원 일본인 2명 사살 건으로, 화전현(樺甸縣)으로 이주 명령을 받은 연길현(延吉縣) 웅성습자(甕城習子) 주둔 보병 677단 제3영은 다시 길림으로 주둔지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영장 왕덕림은 이주 이후에 해산당할 것을 우려하여 출발 도중 퇴각하여 연길현 소성자(小城子)에 주둔하였으나 대원 중에 반(反) 길림신정부, 반일 기운이 퍼져 반란이 일어나려는 상황이다.

아사바(淺羽) 순사의 순직

1월 13일 오후 11시 10분 본관 경찰서 순사 아사바 준이치(淺羽順一) 외 4명은 연길현 소허문리(小許門里)에 잠복하여 무장공비 동만특위 군사부장 김춘일(金春一)파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하였는데, 적은 완강히 발포하고 저항하여 교전 중에 아사바 순사는 적탄을 맞아 순직하였다.

민생단 창립대회의 준비

재경성 매일신보 사장 박석윤(朴錫胤)의 주창과 관련된 민생단은 작년 말 이래 조직을 준비하여 2월 15일 창립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각지 대표를 소집하였다.

중국 신문 『민성보(民聲報)』 발행금지

용정촌에서 발행 중인 중국 측 기관지 『민성보』는 종래 배일 기사를 게재해 왔는데 연길시정 수비처장 계빈(啓彬)은 일본과 중국의 시국에 비추어 이 신문의 발간을 속행하면 국교(國交)상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1월 1일로 발행정지를 명하였다.

민족과 불령선인의 시국대책회의 개최

빈현(賓縣)을 중심으로 동지(東支) 연선 각지에 산재한 민족과 불령선인 등은 만주 신정권의 기초가 점차 강고해지는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1월 5일 국민부 한족연

합회 고려공산당과 기타 단체 대표 40여 명이 빈현에서 회합하여 재만 조선인 문제를 논의하였다. 유동열(柳東悅) 일파는 대체로 순응하여 일본 측의 양해를 얻어 자치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청천(李青天), 남대관(南大觀) 일파는 어디까지나 절대 독립주의로 중국국민당과 합류하여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자의 의견이 대립하여 논쟁하였다.

- 2월

왕덕림 부대의 반란 및 군경단의 동요

영장 왕덕림이 이끄는 연길현 소성자 주둔 보명 제677단 제3영은 길림 신정권에 반대하는 기풍이 농후하여 드디어 2월 11일 반란을 일으켜 구국의용군이라 칭하고 주둔지 부근의 공안국 및 보위단을 습격하여 총기를 약탈했다. 각지의 주둔 경찰서에는 반란 부대의 선전으로 전반적으로 불안한 정세가 더해졌다.

중국 공산당의 당세 만회운동

왕덕림 반란부대의 토벌로 지방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중국 공산당원 등은 부농의 토지와 곡물의 분배 및 일본 측 주구의 청산을 주장하며 지방민을 모아 시위운동을 주도하거나 양민을 구타 폭행하는 등 그들의 당세 만회운동은 점차 노골화하여 각지로 파급되고 확대되는 징조가 보인다.

점점지방 마적단의 간도 평야 진출계획

인접지대에서 행동 중인 마적단 및 대도회(大刀會) 비적 등은 왕덕림 부대와 기맥을 통하여 간도평야 진출을 계획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

중국 측의 시국단속협의회 개최

2월 10일 연길 시 공안국에서 각 경찰단 간부 10여 명이 회합하여 시국단속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만주국 건설에 대한 중국 측의 훈령

길림성 장관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신국가를 건설함에 따라 그 실현에 노력하도

록 예하 각 기관에 훈령하였다.

- 3월

대도회 비적의 천보산(天寶山) 분서 습격

안도현 방면에서 침입한 대도회 비적 약 50명은 3월 22일 오전 2시 20분경 천보산 분서를 습격하였는데 우리 경찰대는 바로 응전, 교전하여 약 25분 만에 격퇴시켰다. 적은 사체 5구, 창 7개, 기타 물건들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우리 측에서는 총상 부상자 2명이 나왔다.

팔도구 분서장의 병비 격퇴

3월 26일 팔도구 남방으로 약 30정(町) 근방에 있는 동신평(東新坪)에 병비 약 30명이 집합하여 팔도구 분서 습격을 기도하였다. 이에 동 분서원이 출동하여 격퇴하였다.

반군 왕덕림 부대의 진출 및 백도구 분관의 퇴거

영안현(寧安縣) 남호두(南湖頭)에서 반군 왕덕림 부대 약 1,400명이 연길현 소성자로 진입하고 더욱 남하하여 백초구(百草溝)로 쳐들어가는 등 정황이 긴급해졌으므로, 3월 31일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분관원 가족 및 재류민을 국자가 및 용정촌으로 피신시켰다.

연길현장의 소작변법(小作辦法) 개정방식 품청

연길현장 고지원(高志遠)은 소작쟁의가 빈발하면서 구(舊)소작변법을 개정할 필요를 느껴 '4, 6할을 5, 5할로 바꾼다' 등 4항으로 이루어진 개선안을 작성하여 길림성 장관 앞으로 품신하였다.

훈춘현 중국인 유력자의 빈민구제 진정

훈춘현 농무회장, 상무회장, 교육회 간사, 기타 유력자 여러 명은 작년의 농작 상황을 고려하여 공민 대표로서 길림성 장관 앞으로 빈민구제책을 강구하도록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백초구(百草溝) 영사 분관 및 각 경찰 분서의 이전

병비 왕덕림 부대가 다시 간도를 침입하면서 훈춘 지방에 산재한 적단의 세력이 점차 증대하였다. 그들은 서로 연락하여 우리 영사관 및 경찰 분서 소재지를 습격할 기세를 보여 정황이 점점 급박해졌다. 이에 4월 1일 삼도구(三道溝)는 이도구(二道溝)로, 4월 3일 백도구 분관은 국자가(局子街)로 그리고 웅성습자(甕城礮子) 분서는 4월 9일 천보산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간도 파견군의 출동

왕덕림군의 반란 이후 간도 지방의 정세가 험악해지면서 4월 3일 제19사단 관하의 한 부대인 보기포공(步騎砲工), 혼성 2개 대대는 회령 보병 제75 연대장 이케다(池田) 대좌의 통솔하에 간도로 출동하여 만주국 군경을 지원하고 병비 토벌을 수행했다.

비적의 이도구 경찰 분서 습격

이도구 오지에 침거하며 기회를 노리던 대도회 및 반란군경 약 500명은 4월 8일 오전 7시 40분경 갑자기 이도구를 습격하였다. 그러자 그 지역에 주둔하던 보위단 공안국원 90명은 반란 비적과 합대(合隊) 호응하여 우리 분서를 습격해 왔고, 우리는 응전하던 중 격전 4시간 만에 우리 비행대와 군경대의 응원을 얻어 격퇴에 힘썼다. 이에 적의 주력은 사체 60여 구와 무기 다수를 버리고 패주하였다. 이 전투로 이테(井手) 순사가 전사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비적의 양수천자(凉水泉子) 분서 습격

4월 24일 오후 5시경 비적 약 70명은 양수천자 분서 소재지인 남대동을 습격해 오자 분서원은 이에 응전 교전하여 약 2시간 뒤 이를 격퇴하였다. 적은 사체 2구를 버리고 패주하였고 우리 측의 피해는 없었다.

중국 공산당원의 폭행

중국 공산당원 등은 비적 구국군(救國軍)에 합류하여 제국주의 타도, 간도 출병 반대,

돈도(敦圖) 철도 부설이라는 표어하에 더욱 창궐하여 유산자의 식량을 약탈하여 당원에게 분배하며 주구의 청산이라 하고, 친일 조선인을 살해하는 등의 폭거를 서슴치 않았다.

만주국의 건국기념 은사

연길 제4 감옥에서는 길림성 공서의 훈령에 기초하여 만주국 건국기념으로 은사를 행하여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인 58명, 조선인 90명을 석방하였다.

조선인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개편안 취소 및 배일 교직원의 숙청방침 지령

연길현 교육국에서는 구(舊)길림성 당국의 조선인 사립학교 공립개편안은 만주국의 성립으로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배일 교직원의 숙청방침의 지령을 발하였다.

적군(赤軍)의 국경지방 증병

공산 러시아에서는 만주의 시국을 보아 국경 경비력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모스크바’ ‘하바로프스크’ 두 곳에서 각 350명 및 군용 자동차 5대를 연추(煙秋)로 파견하였다.

- 5월

성 경찰대원의 반란과 대랍자(大拉子) 분서 습격

5월 9일 오후 10시 40분 대랍자 주둔의 성 경찰대 제19분대원의 대부분인 64명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 동 대장 및 대원을 살상한 뒤 대랍자 서쪽 고지에 자리를 잡고 우리 분서를 향해 사격을 개시하였다. 이때 응전하던 센다(千田) 순사는 복부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어 절명하였다.

훈춘 왕옥진(王玉振) 부대의 동요

훈춘현 토문자(土問子) 주둔의 보병 제8단 제2영은 왕덕림의 반란 후 동요하고 있던 차, 4월 중순 영장 왕옥진은 제8단장으로 임명되었으나, 부하 때문에 장기(長期) 항일 구국군으로 옹립되었다. 이에 따라 단장 취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일 반만의 태도를 점차 노골화하였다.

돈도 철도의 공사 개시

이미 측량을 종료한 돈도선 부설공사는 연길 돈화현 합이파령(哈爾巴嶺) 이동을 7공구로 나누어 일만군경의 엄호하에 5월 하순부터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칭천 일파의 행동

전(前) 국민부(國民府) 수령 이칭천은 동지선 해림(海林) 부근에서 전 국민부 및 한족 연합회, 기타 불령단체 계열의 무장대 약 200명을 규합하여 구군군 엄호대를 조직하였다. 4월 20일경 영안현(寧安縣) 남호두(南湖頭)로 이동해 와서 병비 왕덕림 부대와 합대하였다.

만주국 측의 철도 연선 상부지(商埠地) 부근에 고량(高粱)³⁾ 등의 경작 금지

만주국 측에서는 비적의 발호에 따라 경비상 철도선 양쪽 각 1리 이내 및 상부지를 낀 5리 이내에 고량(高粱), 옥수수 등의 경작을 금지하였다.

연길현 교육국의 교육행정회의 개최

5월 10일 연길현 교육국에서 교육행정회의를 개최하여 삼민주의에 관한 일체의 서적의 열독 금지, 교원의 자질개선, 소학교의 확장 등을 결의하였다.

- 6월

비적의 알하하(嘎呀河) 분서 습격

6월 9일 오전 4시 10분 비적 구국군 약 200명이 알하하 분서를 습격해 와서 동 분서원은 응원차 와 있던 우메노(梅野) 소위 이하 10명과 협력하여 약 30분간 교전 끝에 격퇴하였다. 우리 측의 피해는 없었고 적은 사체 10구와 개인장비 몇 점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비적의 삼도구 분서 습격

6월 14일 오전 10시 5분 왕덕림 반군의 별동대가 이끄는 병비 및 대도회 비적이 섞인 비적 약 500명이 삼도구로 쳐들어와 당시 주둔하고 있던 만주국육군 및 공안분국원의

3) 중국북부에서 재배하는 옥수수의 일종. 고량주의 원료.

대부분을 투항 합대시켜 우리 분서를 공격해 왔다. 그중에 한 부대가 시내의 약탈을 개시하여 우리 분서원은 용감히 이들과 응전하던 중 오후 1시 30분경부터 두 번에 걸친 우리 비행기의 구원 폭격이 있어 교전 5시간 30분 만에 이를 격퇴하였다. 적은 사체 23구 및 무기 장구 다수를 버리고 패주하였다. 우리 측의 손해는 없었으나 적의 방화로 인가 약 300호를 다 태우고 조선인, 중국인의 사상자 64명을 내었고 기타 약탈로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였다.

이마이(今井), 가토(加藤) 두 순사의 순직과 최 순사의 행방불명

6월 23일 두도구 수비대 니시무라(西村) 소대의 비적 토벌을 따라 이도구(二道溝) 분서 사토(佐藤) 부장은 본 관서로부터 응원차 이마이, 가토 두 순사 등 9명을 이끌고 이원촌(梨原村)으로 출동했으나 그곳에서 약 200명의 비적을 만나 교전하던 중 비적의 포위를 당했다. 이마이, 가토 양 순사가 장렬히 전사하였고 사토 부장은 오른팔에 관통상을 입었으며 최 순사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적에게 납치되었다.

만주국 측의 비적 피해 이재민 구제

만주국 측에서 비적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제를 위해 6월 1일 연변 4현에 일본 돈 4,800엔을 지급한 바 각 현에 1,200원씩 분급하였다.

만주국 측의 피난민 구제계획

훈춘현 농회장 왕지란(王芝蘭)은 훈춘현장의 승인을 얻어 현 농회가 저축하고 있는 곡물 240석을 피난 중인 빈곤자에게 배급할 계획하여 조사를 하였다.

공산 러시아의 국경경비대 증파

재블라디보스토크 제5군단 사령부에서는 6월 상순 남부 우수리 추상별리(秋上別里) 및 한청구(韓淸溝) 두 곳에 기마경비대 180명을 증파하였다.

독일인 선교사 살해

용정촌 천주교 신부 독일인 박교범(朴教範)은 용성읍자 지방을 여행하던 중 6월 5일 연길현 승례향(崇禮鄉) 토문자(土門子)에서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었다.

비적의 남평(南坪) 습격

7월 9일 오전 3시 20분 비적 약 150명은 남평으로 진출해 와서, 우리 분서를 중심으로 부락을 포위하고 동서 양쪽에서 침입하여 한 부대는 방화 약탈을 자행하고 한 부대는 우리 분서를 공격하였다. 이에 응전하던 중 시계야마(茂山) 수비대가 응원 교전하여 한 시간 만에 적은 사체 5구 등을 남기고 달아났다. 추격 중이던 시치하라(七原) 순사와 오하라(小原) 일등병은 중상을 입었다.

비적과 양수천자 분서원의 교전

7월 1일 약 100명의 비적단이 남대동(南大洞)에서 양수천자로 이전하는 우리 분서원을 중간에서 습격하려 한다는 첩보가 있었다. 분서장은 온성(穩城) 수비대의 응원을 받아 이전을 결행하려 했으나 여전히 양수천자를 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13일 하알하(下嘎河)에 주둔한 우메노(梅野) 소위 이하 17명의 응원을 얻고 이에 서원 9명을 더해 출동시켜 석두하자(石頭河子)에서 약 50여 명의 비적을 격파하여 패주시켰다. 이 전투에서 오쿠무라(奥村) 순사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만주국 측의 경찰관리 지도, 감독 방침 훈령

길림성 공서 경무청에서는 경찰관리 중 비적에 투신하는 자가 있음에 비추어 이를 방지하고 지도 감독할 방침에 대해 예하 각 기관에 훈령을 발하였다.

자위단조직협의회 개최

7월 16일 국자가에서 일만선 관리 합동으로 연길현 내의 자위단 조직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요다(依田) 순사의 순직

국자가 분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요다 요시오(依田善雄) 순사는 돈도 철도 공사의 호위 근무 중 7월 7일 연길현 소영자(小營子) 부근에서 비적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가운데 9월 5일 결국 순직하였다.

국제연맹조사위원의 내방

국제연맹조사위원 독일인 양은 7월 21일 조선을 경유하여 용정에 와 간도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장춘으로 갔다.

- 8월

병공비(兵共匪) 혼합비적단의 동불사(銅佛寺) 습격

8월 26일 병공비의 혼합비적단 약 220명이 동불사를 습격하였다. 이에 우리 분서원은 한 시간 정도 교전하여 결국 격퇴시켰으나 가옥 네 채가 전소하고 비적단에 의해 조선인 1명이 죽고 29명이 인질로 잡혔다.

병공비 혼합비적단의 팔도구 습격

8월 14일 오전 2시 병공비 혼합비적단 약 308명이 팔도구로 습격해 왔다. 이에 우리 분서원은 두 시간여 응전하다 격퇴하였고, 응원차 도착한 파견군 기병대와 합류하여 적의 주력을 추격하다 벼락을 맞았다. 이때 아베(安部) 부장은 감전되어 하반신이 마비되었고 땀만 흘리는 증상을 보였다.

- 9월

중국 공산당의 추수폭동 계획

병비(兵匪)와 합동공작으로 각지에서 반일병사후원회를 조직하여 포악을 떨고 있는 중국 공산당원 일파는 추수를 맞아 소작쟁의를 유발하여 폭동을 일으키려고 극력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다. 또한 동만특위는 소속 당부(黨部)에 대해 당원 중 의용군을 편성하여 비적단에 참가시켜 반일의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병사위원회 및 반제동맹을 조직하여 비적 적화에 힘을 쓸 것을 지령함으로써 점차 반란 병비적을 선동·규합하여 소위 적위군의 무장조직의 결성을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병공비 혼합비적단의 의란구(依蘭溝) 습격

9월 4일 오전 2시 공비가 섞인 약 150명의 비적단이 연길현 의란구 시가로 습격해 와, 수비대 및 분서에 사격을 가하고 시가지 전체에 방화 약탈을 개시하였다. 이에 분서원

이 수비대와 협력하여 격퇴에 애쓴 결과 교전 50분 만에 적은 사체 3구, 장총 3자루, 창과 기타 물건 등을 남기고 퇴각하였다. 주민의 피해는 가옥 소실 300호, 사상자 6명이다.

경찰 분서 증설

연길현 조양천(朝陽川), 위자구(葦子溝), 회막동(灰幕洞), 화룡현(和龍縣) 개산둔(開山屯)의 네 곳에 경찰 분서를 설치하고 9월 1일 개설사무를 개시한다.

- 10월

비적단과 공산당원의 이반 및 추수투쟁

공비는 비적단과 합대(合隊)하여 위력을 떨치고 있던 차 비적단 중에 귀순을 원하여 공비를 배격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실망하여 비적단에 참가 중인 공산의용군을 철회하고 공산당의 독자적 활동으로 신국면을 전개하기 위해 각지에 출몰하여 무장탈취, 소작료 분배 방해 및 곡물운반의 저지 혹은 지주 부농의 살해 등 소위 추수투쟁에 의한 적화를 기도하여 흉폭함을 드러내고 있다.

비적의 노두구(老頭溝) 습격

10월 2일 오후 11시 비적 약 100명이 연길 노두구를 습격하여 우리 수비대 및 분서에서는 교전 2시간여 만에 이를 북방으로 격퇴하였으나 피해가옥이 전소 10동, 약탈된 식량과 의류가 5,000여 원에 이르고 조선인 2명이 납치되었다.

비적의 노두구 습격

10월 17일 오후 8시에 두목 인의(仁義)가 이끄는 약 600명의 비적단이 노두구를 습격하고 우리 수비대 및 경찰 분서를 공격하였다. 교전 2시간 만에 북방으로 격퇴했으나 주민 사상자 8명, 납치된 일본인 2명, 만주와 조선인 14명, 약탈 92호, 가옥전소 4동(棟), 손해 합계 1억 8,000여 원에 이르렀다. 적은 사체 2구를 남기고 우리의 손해는 없었다.

비적의 동불사 습격

10월 25일 오후 8시경에 약 6,000명의 비적단이 연길현 동불사를 습격하여 우리 분서원은 교전 약 3시간 만에 이를 북방으로 격퇴하였다. 이후 만주인 2명을 납치하고 말 25

필과 기타를 약탈하였다.

비적의 백초구(百草溝) 습격

10월 28일 오전 4시 약 300명의 비적단이 백초구로 쳐들어 와 우리 수비대 및 경찰대와 교전하여 약 2시간 만에 북방으로 패퇴하였고, 이 전투로 만주국 공안국 순경 안등행(安藤幸)이 전사하고 적은 사체 70구를 버리고 도망갔다. 우리 경찰 및 주민의 피해는 없었다.

추수보호 개시

군공비의 발호가 심해 각지 만선(滿鮮) 농민의 추수가 불능상태에 이른 상황을 보고 우리 경찰기관은 파견대와 협력하여 이의 보호를 개시하였다.

- 11월

중국 공산당의 공작 변화

중국 공산당은 종래 연합행동을 취해 왔고 비적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국면 전환의 필요에 직면하였다. 이에 관해 만주성위원회는 11월 11일 동만특위(東滿特委)에 대해 종래의 공작 결합에 의한 맹동적 살인, 방화, 폭동의 오류 및 조직공작의 유지, 줄렬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들 현지의 사정에 맞지 않는 공작노선을 바꿈과 동시에 당 적위대(赤衛隊) 유격대 등의 무장단체를 왕청현(汪淸縣) 나자구(羅子溝) 및 연길현 삼도외(三道崴) 방면으로 당적위대 유격대 등 무장단체의 집결을 명하고, 당단(黨團) 및 당의 지도에 의한 군중 단체는 종래의 번잡한 조직을 정돈하고, 당의 공작을 도시에 집중시켜 당원의 산업화로 관현의 주의를 피해 잠행운동으로 조직 선전공작을 강화할 것을 지령하였다.

비적의 동불사 습격

11월 2일 오후 8시 병공비 혼합비적 약 450명이 동불사로 쳐들어 와 우리 분서원은 노두구 및 조양천수비대의 응원을 얻어 교전 20분 만에 이를 격퇴했으나 야기사와(八木沢) 상등병이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고 주민 한 명이 부상을 입고, 8명이 피랍되었다.

용성습자 분서원의 비적과 교전 및 후루야(古屋) 순사의 순직

10월 31일 용성습자 분서원 13명은 그곳 수비대의 지원을 얻어 도목구(倒木溝) 용림평(龍林坪) 지방공비 검거 차 출동하던 중 약 50명의 병공비 혼합비적과 만나 교전하다가 후루야 순사는 적탄을 맞아 순직하였고 적은 교전 20분 만에 사체 4, 장총 4, 기타를 유기하고 도망하였다.

- 12월

파견대의 비적 소탕 개시

각지에 칩거하는 비적은 활발한 행동 없이 귀순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그 성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간도 파견군에서는 12월 20일부터 이들 비적을 소탕하였다.

공산당의 분열

공산당 동만특위 일파는 앞 만주성위의 공작노선 변경지령에 기초하여 극단적인 파괴 폭동을 정지하고 잠행운동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경기관의 준열한 검거 소탕으로 당의 중요 간부 다수를 잃고 연락기관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당내의 통제를 잃고 과격분자의 일부는 당의 지도를 벗어나 살인 강도단으로 변해 각지에 출몰하였다.

사상 선도 강연과 공비의 자수 신고

우리 경찰기관은 파견군과 협력하여 공비의 검거, 소탕에 힘쓰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문서 혹은 강연으로 그들의 사상 선도에 관한 선전을 하여 적극적으로 인심의 안정을 꾀하고 있어 그 효과가 눈에 띈다. 최근 약 1개월 동안 본 관서에 자수 신고한 자가 110명이나 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부 우수리 지방의 일로 개전설

12월 20일 블라디보스토크 시 교육부 시학(視學) 러시아인 빈스키라는 자가 연추(煙秋)에 와서 재주 공산당원 기타 수백 명을 모아 국제연맹의 동향 및 러시아·중국의 국교 부활에 관한 경위를 강연하였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장차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말하며 당원들을 고무시켰으므로 그 지역 주민의 일부는 일로 개전설 유포에 민심

이 동요되고 있다.

주동희(朱東熙) 순사의 순직

12월 9일 파견대 가네타니(金谷) 중대의 비적 토벌에 출동한 국자가 분관 경찰서 순사 주동희는 둔전영(屯田營) 남방 고지에서 전투 중 분전하다 적탄을 맞아 순직하였다.

고다카 히로야(小鷹博哉) 순사 순직

12월 4일 삼도구 분서에 근무하는 고다카 히로야 순사는 삼도구 서북단 만주국인 조청의(趙靑義) 집에서 정보수집 중 비적의 습격을 받았다.

〈출전 : 昭和七年中間島(琿春縣ヲ含ム)及接壤地方重要治安事項月別表, 1932년,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19, 고려서림, 2001년, 941~952쪽〉

2. 조선인 민회

1) 조선인 거류민회 설립에 관한 건

1917년 6월 14일

재간도

총영사 대리영사 스즈키 요타로(鈴木要太郎)

외무대신 법학박사 자작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 전(殿)

조선인 거류민회 설립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지난달 보내주신 31일자 기밀송부 제11호 전신에 답신을 보냅니다. 훈령의 취지에 의거하여 시급히 조직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설립비는 별지에 기재한 대로 약 850엔이 들 전망이고 발회식에 필요한 비용 등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둬진 기부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부족액 500엔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월액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선총독부에서 향후 1년간 경비 전액, 즉 당지에서 매월 50엔, 두도구에서 매월 30엔, 훈춘에서 매월 30엔을 보조하고 다음 연도부터 3분의 2를 보조하며, 3년째 즉 1919년 이후부터 당분간 그 반액을 지출할 것이라는 내락을 받았고 훈춘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 지방은 곧 우기에 접어들어 가옥 수선이 어려워지니 위 보조금 지급 건은 아무쪼록 전보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도구 등은 그곳의 분관 주임과 협의 중이며 다시 전보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을 붙여 보냅니다.

용정촌 조선인 거류민회 개설비 견적서

1. 금 400엔 사무소로 쓸 가옥의 수선비
 - 1) 지붕 교체 200엔
 - 2) 회의실 사무실 수선 100엔
 - 3) 이사 및 급사실 수선 100엔
2. 금 150엔 사무소 비품 기구 문방구 기타 잡기 구입비

3. 금 250엔 발회식비

입회자 약 500명을 소집할 예정으로 한 명당 50전의 비용이 들 예정임

4. 금 50엔 잡비

합계 금 850엔

〈출전 : 朝鮮人居留民會設立ニ關スル件, 1917년 6월 14일, 『在外各地朝鮮人會設立關係雜件』,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40~43쪽〉

2) 군대 출동에 의한 간도 진정(鎮靜)에 대한 사의(謝意)

전보 12월 16일

대신 앞 발신자 간도

황군의 출동으로 간도 일대가 진정되어 우리 양민의 감격은 금할 수 없습니다. 장래 제국 신민으로 봉공의 의무를 다할 것이니 특히 조선 재주 동포와 같이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인 대표 민회장 이희덕(李喜德)

〈출전 : 軍隊出動ニヨリ間島鎮靜ノ謝意(1920년 12월 16일), 『間島事件關係書類』 2, 1922년, 107쪽〉

3) 1924년 조선인 민회 보조에 관한 건

기밀공(機密公) 제199호

1924년 6월 7일

재봉천 총영사 후나쓰 다쓰이치로(船津辰一郎)

외무대신 남작(男爵) 마쓰이 게이시로(松井慶四郎) 전(殿)

1924년도 조선인 민회 보조에 관한 건

본 건에 관해 4월 9일자 아삼기밀(亞三機密)⁴⁾ 제75호로 훈달을 받은바 당 영내에서 조선인단체 중 보조를 요하는 곳은 다음의 봉천(奉天), 무순(撫順), 흥경(興京) 세 곳으로 그 보조금 합계가 1만 7,361엔입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설명해 놓았으니 특히 살펴보신 뒤 하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봉천 일본 거류민회 금 10,100엔
무순 조선인 민회 금 1,681엔
흥경 조선인회 4,570엔
이상

1. 전년도에 이어 보조를 필요로 하는 것(별표)

1. 1924년도에 새롭게 보조를 요하는 것. 단 만주 보민회 흥경 지부 폐지로 이를 대신할 조선인 단체이다.
 - (1) 명칭, 소재지
흥경 조선인회(흥경현 신빈보(新賓堡))
 - (2) 연혁 개요
만주 보민회 흥경 지부가 폐지되어 이를 대신하는 조선인 단체로서 올해 3월 28일 신설된 것이다.
 - (3) 현재 상황
 - A. 사업의 종류
 1. 교육사업(회 구역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을 위해 흥경보통학교를 경영한다)
 2. 의료소 설립(흥경 신빈보에 거주하는 조선인 개업의를 동 회 촉탁의로 하여 조선인 빈곤자에 대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때때로 각 부락을 순회 진료하도록 한다)
 3. 산업 장려(산업 장려를 위해 개량종자의 배급 및 독농가에 대해 표창한다)

4) 아시아국 제3과 기밀.

4. 공민구제
5. 공민 중 본국 또는 본인의 희망지로 이송
6. 전염병 예방
7. 조선인에 대한 모든 조사

B. 재정 개황

회원의 대부분은 빈곤자이므로 윤택한 재원을 얻기 힘들다.

1924년도 예산 중 회원 부담 부가금(회비)은 1,076엔, 학교수업료는 153엔이 되나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C. 회원 호수와 인구(회원의 가족도) 및 직업

홍경현 거주 조선인을 회원으로 한다. 그리고 그 호수는 492호, 인구는 2만 8,590명이고, 직업은 호수의 9할이 농업이고 기타 학교 교사, 의사, 목사, 상업, 정미업, 요식업, 잡화상이다.

(4) 1924년도 경비예산

(별책대로)

(5) 임원의 원적, 이름, 기타

원적	직명	이름	생년월일
평북 태천군 동면 풍림동	회장	백형숙(白衡壽)	1879년 11월 30일
평북 태천군 강서면 덕림동	부회장	병광훈(芮光勳)	1889년 1월 30일
평북 정주군 정주면 서부동	평의원	백몽량(白夢良)	1893년
	평의원	노화관(盧華觀)	
평북 창성군 청산면 양덕동	동(同)	허 운(許 鎰)	1891년
	동	김용수(金龍洙)	
	동	차중호(車仲浩)	
경기도 경성부 안현부	동	홍대영(洪大英)	1868년
평북 철산군 정혜면 상하동	동	정치곤(鄭致琨)	1895년 12월 8일
	동	김학수(金學洙)	
평북 벽군 가면 유성동	동	김영순(金永淳)	1880년 1월 27일
	동	최일화(崔日和)	1877년
	동	김희순(金熙淳)	
	동	오성희(吳成熙)	
	동	박창환(朴昌煥)	
평북 용천군 남시역전	동	내문원(勾文元)	1902년 12월 11일
	동	장고윤(蔣考潤)	

	동	김응순(金應淳)	
	동	이흥백(李興栢)	
	동	이학근(李學根)	
	동	김창룡(金昌龍)	
	동	독고평(獨孤枰)	

(6) 회칙(별지와 같음), 이상

흥경 조선인회 규칙

제1조 본회는 흥경 조선인회로 한다.

제2조 본회는 거주 조선인의 친목을 꾀하고 산업, 교육, 위생을 장려하고 공동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흥경현에 거주하는 조선인으로 조직한다.

제4조 본회의 위치는 흥경현 신빈보에 둔다.

간부회의 결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규칙 제정 및 변경은 소관 영사의 허가를 요한다.

제5조 본회에 회원명부를 두고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원적, 주소, 이름, 생년월일, 직업, 종교
- 동거 가족에 관한 제1호의 사항

회무에 필요한 부기책은 회칙으로 이를 정한다.

제2장 회 및 회원

제6조 회 및 회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관 영사에게 보고한다.

제7조 본회의 회원은 일가를 이루고 일정한 직업을 갖는 성년 이상의 남녀로 한다.

제8조 회원은 본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9조 회원은 본회의 임원을 선발하고 또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간부

제10조 본 회에 다음의 간부를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서기 1명
4. 평의원 20명

제11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의장으로 일반 회원을 총리한다.

제12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제13조 서기는 회장의 명령으로 회계, 기타 일반 서무에 종사한다.

제14조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조직하고 일반 회무를 평의한다.

제15조 본 회의 간부는 모두 총회의 결의에 의해 투표하고 이를 선거한다. 단 서기는 평의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6조 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간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할 수 없다.

제17조 간부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급여

제18조 회장, 부회장을 명예직으로 한다.

제19조 본 회의 서기에게는 상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5장 회의

제20조 회의는 총회, 임시총회 및 평의원회의 세 종류로 한다.

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원의 5분의 1 이상, 평의원의 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최할 수 없다.

제21조 총회는 매년 3월에 열고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 및 다음해 예산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평의원은 매월 15일에 정례회의를 열고 일반 회무에 관한 사항을 평의한다.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평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바로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제6장 회계

제24조 본 회의 회비는 회원이 부담하는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수입금은 상당한 금융기관에 이를 예입하고 예금 및 부기 장부 등은 매월 말에 회장이 검사한다.

제25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회원의 부담액은 회에서 이를 결의하고 징수한다.

제27조 회장은 매년 3월 본 회 및 지회의 수지 예산을 세워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해 회계 개시 전에 소관 영사의 인가를 받는다.

제28조 기정 예산 추가 또는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는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관 영사의 인가를 얻도록 한다.

부칙

제29조 본 회칙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소관 영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30조 본 회칙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고 소관 영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출전 : 大正13年度鮮人民會補助二關スル件, 1924년 6월 7일,
『朝鮮人ニ對スル施政關係雜件 朝鮮人民會』 5,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4) 간도 협의회에 관한 건

1932년 5월 20일자 재간도 오카다(岡田) 총영사 발신 요시자와(芳澤) 외무대신 앞 보고 요지

간도 협의회에 관한 건

간도 출병에 즈음하여 동 지방의 특수 사정에 맞추어 민정 및 자치단체의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각 기관의 협동 연락을 취하기 위해, 간도 주재 육군특무기관장 관동군 파견막료, 재간도 총영사, 조선총독부 파견원 및 신국가 측 대표자로 조직된 간도 협의회가 성립되었다. 동 협의회 첫 회의를 5월 18일 간도 총영사관 내에서 관동군막료의 파견 없이 개최하여 회의방법 및 처리를 논의했고, 제2회는 5월 23일 국자가에서 개최하여 간도 유신회 및 자위단에 관한 협의를 했다.

간도 협의회 의사록 1932년 5월 18일

1. 간도 협의회는 예회를 2주에 한 번 목요일에 개최할 것
2. 간도 협의회는 위의 예회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회의 사회자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예회는 대개 순번으로 하며 임시회에서는 회합을 요구한 위원이 사회를 본다.
4. 회의에서 제안한 사항은 제안자가 회의 종료 후 결의와 함께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포한다.
5. 회의에는 위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자를 동반할 수 있다.
6. 회의는 용정에서는 영사관, 연길에서는 주비처(籌備處)로 하여 대체로 서로 번갈아 사용하고 시간은 통상 오후 2시에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7. 5월 20일 국자가에서 시행하는 만주건국축하회는 전 간도의 일본인과 중국인 관민 합동으로 거행하고 파견대 주비처, 총영사관에서 각각 소관에 따라 지도하기로 한다.
8. 국자가 기타 지역에서 각 방면의 연락을 원만히 하도록 간도 협의회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설립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그 지방 이외에 관계를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도 협의회 동의 없이 결의하거나 실행을 요구할 수 없다.